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192-01

농림수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내수면어업의 기본제도에 관한 연구

2012. 1.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내수면어업의 기본제도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김 유 환

《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정순(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철호(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요약면

1. 연구의 개요

□ 연구명 : 내수면어업의 기본제도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 8. 16 ~ 2012. 1. 16(5개월)

□ 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추진과정

○ 보고회

- 착수보고회

1. 일시 : 2011. 8. 25(목) 10:30- 12:00

2. 장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소회의실

- 중간보고회

1. 일시 : 2011. 10. 20(목) 14:00 ~ 2011. 10. 21(금) 12:00

2. 장소 : 전남 해남 땅끝호텔

- 최종보고회

1. 일시 : 2011. 12. 29(목) 16:00- 18:00

2. 장소 : 농림수산식품부 6층 대회의실

○ 내수면어업인 간담회 개최

1. 일시 : 2011. 12. 21(수) 11:00-15:00

2. 장소 : 중앙내수면연구소

○ 워크숍 개최

1. 일시 : 2011. 12. 26.(월) 11:00~14:00

2. 장소 : 양재동 디오라마

○ 현장조사

- 전남 내수면시험장 양식시설 방문(장성, 2012. 1. 10.)

- 충북 내수면연구소 및 충북지역 양식장 방문(충주, 2012. 1. 16)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내수면어업 제도는 2005년 「내수면어업법」 제정 이후 면허, 허가, 신고어업을 기본으로 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수산물생산 및 어업인의 생활수준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어 왔음.
- FTA 확산 등 국제화 시대에 수산물 수입 급증 등 국내외 어업여건이 급변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서식환경의 변화, 어업자들에 의한 제도개선 요구 등에 대응한 내수면어업 기본제도의 근원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양식어업은 내수면어업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어업으로 분류된 기존의 양식어업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뱀장어, 송어 등의 양식어업은 신고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실정임.
 - 이에 양식어업인들은 말라카이트 그린 과동을 겪으면서 양식어업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FTA 체결 등 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하여 육상양식어업의 허가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또한 내수면어업을 육성, 지원하는 동시에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수면어업의 면허 및 허가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어업실적이 불량한 자, 관계법령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그밖에도,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 및 유어객들과의 분쟁해결 방안 등을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것임.
- 한편, 내수면어업법은 동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수산업법의 많은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바, 내수면어업과 해면어업은 차이가 있고,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규정들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산업법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종류별 어업 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법체계상 준용 규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내수면어업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3. 내수면어업법 개정의 주요 쟁점

(1) 면허, 허가, 신고어업제도의 개선

1) 면허 유효기간 연장시 어업실적 등 평가의 필요성

- 내수면어업법상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 5년으로서, 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가 내려짐.
- 따라서, 어업 경영실적이 부진한 양식어업자도 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최장 20년 동안 어업권을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면허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자동 연장이 아니라 어업권 실적 등을 평가하여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허가의 우선순위 정비

- 현행 내수면어업법상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다만 지역의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서 제1항의 기준에 배치되는 조례가 제정될 여지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우선순위 규정은 허가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나, 이미 5년 동안 어업을 하고 있던 자에 대한 우선순위 인정 규정이 부재하는 문제점이 있음.

3) 신고어업의 재분류

-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현재 내수면어업법상 신고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제한 등에 있어서 보상 수준이 낮고, 어업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며,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양식업의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어업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허가제로의 전환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허가제로 전환의 타당성 및 허가제로 전환할 때 시설 기준 등의 마련 등 법률 및 하위법령의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함.

(2) 기 타

1) 어업인들과 유어자와의 갈등 조정 방안

- 동일 수계내에서 어업인과 유어자간 마찰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만한 수단이 내수면어업법상 존재하지 않음.
- 내수면어업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도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유어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므로, 갈등 발생시 분쟁해결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2중 이상 자망 사용 허용 방안

-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하여 내수면어업에 있어서도 2중 이상 자망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내수면에서는 실제로 3중 자망을 사용한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업인들로부터 지속적인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내수면어업법에도 사용 허용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3) 내수면 수산자원 이식 승인 규정 마련

-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내수면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 어종의 반입 및 국내 어종의 국외 반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에 대해 제한 및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 역시 규제에 해당하므로 수산자원 이식 승인 등에 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상에 별도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내수면어업법상 행정처분 기준의 마련

- 내수면어업법상 행정처분의 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내수면어업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이 필요함.

5) 수산업법, 수산물자원관리법 준용 규정의 정비

-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면어업에 적용되는 수산업법상 규정을 내수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므로 준용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6) 청문 규정의 추가

- 현재 법 제16조의 2에 면허 및 허가어업의 취소에 대한 청문 규정은 존재하는데 반해,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및 정지에 대한 청문 규정이 부재하므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4. 내수면어업법 및 하위법령안 개정안 제시

(1) 면허·허가·신고어업 제도 개선

1) 어업권 관리 강화

- 어업면허 연장시 어업권 경영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러한 경우 그동안의 조업실적이나 법령위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로 볼 수 있으므로 평가 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할 것임.
- 법률 개정안(이하 ‘법률안’이라 한다.)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에 제4항을 신설하여 면허 또는 허가권자로 하여금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새로 신청하는 자에 대해 조업실적, 경영상태, 어업인 교육 수료 등을 평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강화

- 법 제10조 제2항의 조례로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1항의 우선순위 원칙에 배치되는 내용이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규정을 수정함
- 따라서, 법률안 제10조제2항을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동순위자 간의 우선순위에 관해서 지역의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3) 육상양식어업의 허가제로의 전환

- 육상양식어업을 허가제로 전환할 때 허가의 대상은 양식 ‘시설’이 될 것이므로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설 기준을 마련할 때에도 시설에 따른 기준을 시설 규모로 할 것인지 그밖에 다른 기준을 도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양식시설을 갖춘 어업인에 대해서만 허가를 실시하게 되어 영세한 규모의 양식업을 하는 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 경우에는 가장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서 허가제 실시로 인한 새로운 진입 장벽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해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은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육상종묘생산어업으로 분류된 바, 현재 내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은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수산업법상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수조식 양식어업과 축제식 양식어업으로 분류한 것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전업경영인 어업기반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내수면어업법상 육상양식어업을 허가 어업으로 분류할 경우 시설을 수조식 양식어업과 노지식 양식어업으로 분류하고, 시설 규모를 각각 수면적 300㎡과 수면적 600㎡이상으로 하는 기준을 설정함.
 - 이에 따라, 내수면어업법 제9조의 규정을 수정하고, 동법 시행규칙안 [별표 3]에 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을 기존의 자망·연승·패류채취어업 및 낚시망·각망어업과 육상양식어업으로 대별하여 육상양식어업에 대해 어업의 종류, 양식물의 종류, 시설 규모,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규정한 안을 작성함.

(2) 유어객과의 갈등 조정 방안

- 동일 수계 내에서 허가 어업인들과 유어객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하위법령의 제정 내용을 고려하면서 분쟁조정 규정을 두는 것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법률안 제18조(유어질서)에 제2항을 신설하여 동일 수계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자와 유어객간 분쟁 발생시 내수면어업인 단체와 유어자 단체간 분쟁 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안을 작성함.

(3) 2중 이상 자망 사용 허용

-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어구의 사용금지)를 준용하여 내수면에서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사실상 내수면에서 3중 자망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내수면어업법에 2중 이상 자망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수산자원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을 참고하여, 내수면어업법에 제21조의3을 신설하여 내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법률안을 작성함.
 -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에 사용시기의 적절성, 망목, 그물 크기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 결과를 참고할 수 있고, 전항의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사항을 함께 규정함.
 - 법률안 제21조의3에 따라 시행규칙안 제23조를 신설하여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절차 등에 관해서 규정함.

(4) 내수면수산자원의 이식 승인

- 현재 내수면 수산자원의 국내 반입 및 국외 반출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하여 수산자원 이식의 제한·금지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자원 이식 승인 대상 품종 규격 등 승인 기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 기준 등은 어업인들에게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보다는 내수면어업법에 이식 승인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함.
 - 이에 따라 법률안에 21조의4를 신설하여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이식의 제한·금지 또는 승인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안을 작성함.
 - 시행규칙안에 제24조를 신설하여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 기준 및 절차에 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5) 내수면어업법상 행정처분 기준

-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 부과 사항들에 관해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산업법 시행규칙인 「수산관계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 준용되어 왔으나, 내수면어업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내수면어업법에 적용될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률안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에 제5항을 신설하여,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후, 시행규칙안에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별표 6]에서 상세히 규정함.
 - 「수산관계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면허어업과 허가·신고어업으로 분류하고,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또는 취소, 정지 등)을 규정함.

(6) 청문 규정의 추가

- 법률안 제16조의2(청문) 규정에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해서도 청문을 하도록 규정을 수정함.

(7) 과태료 규정의 세분화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상관없이 규정되어 있고,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유가 추가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정이 불가피함.
- 따라서, 시행령안 제18조에 따른 [별표 2]에서는 무신고어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 경우 무신고 어업경영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규정하고, 유어질서 위반 행위, 불법어획물 방류명령 불이행, 어도관련 조치명령 불이행, 어도관리의 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적으로 규정함.

(8) 기 타

1)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정지와 취소사유의 분리

-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사유와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사유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내수면어업법 제16조는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와 면허, 허가의 취소 사유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법률안 제16조제1항에서 공익을 위해 면허·허가·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제2항에서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함.
 - 이 때, 어업의 정지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조항에서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함.
 - 현행 법 규정에서는 제한 또는 정지, 취소 사유에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0조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형식을 되도록 풀어서 규정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어도 관련 규정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도의 설치·관리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어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어도종합관리계획, 시·도어도관리계획 및 시·군·구어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어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내수면어업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중임.
 - 이에 따라, 해당 법률안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작성함.
 - 시행령안 제16조에서는 어도종합관리계획 변경시 협의 예외 사유인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7조에서는 어도관리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명령 등에 관해 규정함.
 - 시행규칙안 제18조에서는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제19조에서는 그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에 관해 규정함.

목 차

제 1 장 연구의 개요	2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2
제 3 절 추진체계 및 전략	22
제 2 장 우리나라 내수면 어업 실태와 문제점 분석	25
제 1 절 대내 및 대외 여건 분석	25
1. 국내 내수면 어업의 현황	25
2. 우리나라 내수면 어업 SWOT분석	27
제 2 절 내수면 어업의 문제점 분석	27
1. 내수면 양식산업의 낮은 대내외 경쟁력	27
2. 내수면 수산식품의 소비촉진 활성화 미흡	27
3. 미래 선제적 내수면분야 연구 미진	28
제 3 장 내수면 어업 관련 법제의 검토	29
제 1 절 국내 내수면 어업 관련 법제 검토	29
1. 내수면어업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검토	29
2. 내수면어업 관련 법제 검토	31
제 2 절 주요 국가의 내수면 어업 관련 법제 검토	46
1. 일본의 내수면어업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46
2. 중국의 내수면어업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56
제 4 장 내수면어업법 등 하위법령 개정안 제시	59
제 1 절 내수면어업법 개정의 주요 쟁점 검토	59
1. 면허·허가·신고어업제도 개선	59
2. 유어객과의 갈등 조정 문제	77
3. 2중 이상 자망 사용의 허용 문제	78

4. 내수면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 기준	83
5. 내수면어업법상 행정처분 기준	87
6. 청문 규정	89
7. 과태료 규정의 세분화	91
8. 기 타	94
제 2 절 내수면어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제시	109
1.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109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	126
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135
참 고 문 헌	147

【부 록】

내수면어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총괄표	151
내수면어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이유	185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이유	21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이유	221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내수면어업제도는 2005년 「내수면어업법」 제정 이후 면허, 허가, 신고어업을 기본제도로 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수산물생산 및 어업인의 생활수준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어 왔음.
- FTA 확산 등 국제화 시대에 수산물 수입 급증 등 국내외 어업여건이 급변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서식환경의 변화, 어업자들에 의한 제도개선 요구 등에 대응한 내수면어업 기본제도의 근원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양식어업은 내수면어업 생산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2010년 기준), 면허어업으로 분류된 기존의 양식어업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뱀장어, 송어 등의 양식어업은 신고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양식어업인들은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을 겪으면서 양식어업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FTA 체결 등 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하여 육상양식어업의 허가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또한 내수면어업을 육성, 지원하는 동시에 내수면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수면어업의 면허 및 허가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어업실적이 불량한 자, 관계법령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그밖에도,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 및 유어객들과의 분쟁해결 방안 등을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것임.
- 한편, 내수면어업법은 본래 수산업법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어서 아직도 많은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바, 내수면어업과 해면어업은 차이가 있고,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규정들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산업법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류별 어업 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하고,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여 내수면어업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이번 연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임
 - 하나는 내수면어업법의 기본제도인 면허·허가·신고어업 제도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상의 개선방안을 반영한 내수면어업법의 개정안 및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임
- 면허·허가·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
 - 어업권 관리 강화 방안 : 어업면허기간 연장시 그간의 어업권 경영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 허가여부 결정 등 어업권의 관리 방안
 - 내수면양식어업의 재분류 : 신고어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 등을 허가어업으로 재분류하는 방안,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의 방법 및 규모 등 시설기준 제시
 - 어업허가제도 관리 방안 : 허가기간 만료시 조업실적, 경영불량자, 관계법령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한 허가여부 사전심사, 일정교육 수료 등 우선순위 검토
 - 2중 이상 자망 사용 허용 방안
 - 유어자와 어업자간 분쟁의 근본적 해결방안 : 동일수계에서 허가어업인과 유어객의 다툼시 이해관계 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을 위한 제도화방안 검토
- 내수면어업법 및 하위법령 전면 개정안 제시
 - 내수면어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포함
 - 내수면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마련
 - 타법에 규정된 내용을 내수면어업법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제 3 절 추진체계 및 전략

-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분야별 전문분야 연구진 구성을 통한 유기적 연구체제 강화 및 정보 수집·활용을 통한 분석 실시, 전문가 및 관계자의 자문을 통한 상호의견 수렴체제 확립 등을 통한 신뢰있는 연구결과 도출 예정

- 분야별 전문분야 연구진 구성을 통한 유기적 연구체제 강화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제연구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산관련 분야의 전문가와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
 - 법제연구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수산업분야의 전문가와 학제간 연구가 될 수 있는 연구진을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도출
- 정보 수집·활용을 통한 분석 실시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기존의 선행연구 및 보고서, 관련기관 및 세미나 자료, 외국 전문기관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최신의 자료를 수집·활용
- 연구품질 및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
 - 담당 분야별 연구 추진현황에 대해 연구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참여 연구진이 내용을 공유하여 연구결과의 품질 향상 도모
- 전문가 및 관계자의 자문을 통한 상호의견 수렴체제 확립
 - 학계, 전문가 중에서 동 연구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구함
 - 어업인 간담회 개최 및 국·도립 내수면연구소 방문
 - 전남, 충북 지역 양식시설 관람

제 2 장 우리나라 내수면 어업 실태와 문제점 분석

제 1 절 대내 및 대외 여건 분석

1. 국내 내수면 어업의 현황

○ 내수면의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5.9% 점유

(단위 : km²)

국 토 면 적	내 수 면				
	총면적	하 천	유 지 (담·호, 저수지)	수 로	양어장
99,897 (100%)	5,925 (5.93%)	2,837 (2.84%)	1,291 (1.29%)	1,780 (1.78%)	17 (0.02%)

* 지적통계연보(2009), 국토해양부

○ 내수면 어업권은 8,457건이며, 면허어업 중심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90년대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인해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신규면허 및 면허연장 불허, 수면관리자의 수면사용 제한 등으로 감소

* 내수면어업 면허건수 : ('90년) 631건 → ('95) 455 → ('00) 228 → ('10) 75

<내수면어업 개발 동향>

(단위 : 건수)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대 비 ('10/'09)
합 계	8,559	8,363	8,471	8,383	8,457	101%
면허어업	146	115	92	82	75	92%
허가어업	4,934	4,882	4,962	4,847	4,708	97%
신고어업	3,479	3,366	3,417	3,454	3,674	106%

* 먼허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어업

* 허가어업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폐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 신고어업 :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

○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80년 중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양식어업을 중심으로 생산량 증가 추세로 전환

- '10년 내수면어업 생산량 및 생산액은 31천톤, 3,338억원으로,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3,127천톤)의 1.0%, 생산액(74,240억원)의 4.5% 점유

※ 내수면어업 총 생산량 대비 양식어업 67%, 어로어업 33% 차지

- '70~'80년대 주 생산 방법인 가두리 양식장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생산량 감소 후 회복

- 최근 뱀장어·송어 등 육상양식 어종의 생산증가로 전반적인 양식어업 생산량이 회복추세임

※ 뱀장어·송어의 2개 어종이 전체 양식생산량의 51% 점유('10년)

· 뱀장어: ('95) 2,348톤 → ('00) 2,725 → ('05) 5,775 → ('10) 7,902

· 송 어: ('95) 2,788톤 → ('00) 2,808 → ('05) 3,320 → ('10) 2,652

<내수면어업 생산동향>

(단위 : 톤)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대 비 ('09/'08)
총생산량	24,843	26,760	29,180	30,071	30,982	103%
어로어업	7,139	5,803	11,098	11,707	10,256	88%
양식어업	17,704	20,957	18,082	18,364	20,726	113%

* 어업생산통계(2010, 통계청)

2. 우리나라 내수면 어업 SWOT분석¹⁾

	강 점(S)	약 점(W)
내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면 어종의 지속적 소비 대응 - 수계별 지역별 다양한 어업 존재 - 내륙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내수면 다원적 가치 보유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감소 및 내수면 산업화 미흡 - 중앙·지방 정부의 행정력 취약 - R&D 기반 약화 및 연구인력 부족 - 내수면 수산물 수입 의존도 심화
	기 회(O)	위 험(T)
외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식용 분야의 성장동력원 육성 - 미래 식량산업으로 내수면 중시 -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육성책 마련 - 친환경 내수면 생태계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심화 - 한중 FTA 등 시장 개방화 가속 - 대책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위협 - 다수 부처 이해관계 심화

제 2 절 내수면 어업의 문제점 분석

1. 내수면 양식산업의 낮은 대내외 경쟁력

- 향어, 미꾸라지 등 저가의 수입수산물 증가, 국내 고유통비용, 국내 소비정체 등으로 경쟁력 약화
 - 내수면 어종 수입량은 2001년부터 2~3만 여톤 유지
- 현행 양식장 대부분이 재래식 양식방법인 지수식(약 63%)이며, 소규모(1천평 미만 19백 개소, 약 65%) 및 노후된 시설로 생산성 저하
 - 고밀도 양식(지수식 대비 단위면적당 생산성 3배) 형태인 순환여과식 시설은 전체의 약 16%에 불과

2. 내수면 수산식품의 소비촉진 활성화 미흡

- 담수어는 소비유통구조가 취약(식당과 소규모 직거래)하고, 일반 국민들이 디스토마 감염우려 등의 인식으로 인하여 소비 부진

1)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작성 '제3차 내수면어업발전계획' 4쪽 참조.

- 전국 내수면어종의 유통물량이 약 40%가 부산·경남지역에 한정되고, 내수면 어류의 소비지역도 일부내륙 지역에 편중

3. 미래 선제적 내수면분야 연구 미진

- 담수어 품종의 열성화(잉어류, 송어류의 근친교배) 및 국내고유 토산어종의 양식 대상 품종개발 미흡
- 뱀장어, 미꾸라지, 송어 등 주요 어종은 수입산 종묘(수정란 및)치어에 의존하여 어업경영의 안정화를 저해
- 고유종 관상어 등 비식용분야 연구 미흡

제 3 장 내수면 어업 관련 법제의 검토

제 1 절 국내 내수면 어업 관련 법제 검토

1. 내수면어업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검토

(1) 면허, 허가, 신고어업제도

1)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 내수면어업법상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 5년으로서, 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가 내려짐.
- 따라서, 어업 경영실적이 부진한 양식어업자도 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최장 20년 동안 어업권을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면허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자동 연장이 아니라 어업권 실적 등을 평가하여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허가의 우선순위

- 현행 내수면어업법상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다만 지역의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제1항의 우선순위 원칙에 배치되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우선순위 규정은 허가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나, 이미 5년 동안 어업을 하고 있던 자에 대한 우선순위 인정 규정이 부재하는 문제점이 있음.

3) 신고어업의 재분류

-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현재 내수면어업법상 신고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제한 등에 있어서 보상 수준이 낮고, 어업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며,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양식업의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어업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허가제로의 전환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허가제 전환의 타당성 및 허가제 전환시 시설 기준에 대한 검토를 요함.

- 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 고부가가치인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나, 관상어양식어업에 대해서는 관상어 육성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함.

(2) 기 타

1) 어업인들과 유어자와의 갈등 발생시 분쟁해결 절차의 부재

- 동일 수계내에서 어업인과 유어자간 마찰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만한 수단이 내수면어업법상 존재하지 않음.
- 내수면어업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도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유어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므로, 갈등 발생시 분쟁해결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2중 이상 자망 사용 허용 방안 모색

-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하여 내수면어업에 있어서도 2중 이상 자망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실제로 3중 자망을 사용한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업인들로부터 지속적인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내수면어업법에도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3) 수산자원 이식 승인에 관한 규정

-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내수면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 어종의 반입 및 국내 어종의 국외 반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에 대해 제한 및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 역시 규제에 해당하므로 수산자원 이식 승인 등에 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상에 별도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내수면어업법상 행정처분 기준의 마련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내수면어업에 적용되지 않는 기준들이 많으므로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수산업법, 수산물자원관리법 준용 규정의 정비

-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및 수산물자원관리법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면어업에 적용되는 수산업법상 규정을 내수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므로 준용되는 규정을 명시해줄 필요가 있음.

6) 청문 규정

- 현재 법 제16조의 2에 면허 및 허가어업의 취소에 대한 청문 규정은 존재하는데 반해,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및 정지에 대한 청문 규정이 부재함.

2. 내수면어업 관련 법제 검토

(1) 수산업법

- 수산업법은 수산자원의 감소와 고갈을 방지함은 물론, 어업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업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는 관리제도로서 어업 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제도를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조성·보호·보존·관리에 관한 법적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수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임.
- 내수면어업법(구 내수면개발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내수면어업은 수산업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내수면어업의 확장에 수반되는 각종 법률문제, 재정지원, 기술개발 및 지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입법을 마련함.
- 그러나, 1975년 내수면개발촉진법이 제정될 때에도 면허·허가·신고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산업법의 체계를 따랐으며,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수산업법을 준용한다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음.
- 해면어업에 적용되는 수산업법의 규정들 중에는 내수면어업법에 준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존재하므로 이를 구별하여 내수면어업법에 별도로 규정할 것과 준용할 규정을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자원관리법

-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범위는 바다, 바닷가,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및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장소적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자원의 관리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한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역시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에게는 규제에 해당하는 규정들이 대부분이므로 내수면어업법에도 주요 규정들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3)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내수면양어장 및 양식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함.
- 기타 수질오염원인 내수면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 제60조제1항,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서에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및 ‘배출방지·억제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가 규정되어 있음.
- 여기에 규정된 ‘침전 시설’의 경우, 시설의 종류에 상관없이 사육시설면적의 20% 이상이고, 깊이가 1미터 내지 1.5미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지지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컨대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유수식 양식시설을 설치·관리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시설면적 기준으로 침전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라고 할 수 있음.

<참조 조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7.4.11, 2007.5.17>

1. “점오염원”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 수질오염원”이라 함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시행규칙 제 2 조(기타 수질오염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1.2.9>

기타 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시설구분	대 상	규 모
1. 수산물 양식 시설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가두리 양식어장	면허대상 모두
	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양만장(養鰻場) 또는 일반양어장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일 것
	다.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일 것

제 5 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법 제60조(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당해 기타 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⑤ 제36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기타 수질오염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86조(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 2.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 3. 제87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제출 관청과 기타 수질오염원이 같고, 입지제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시행규칙 제87조(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시행규칙 제88조(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19] <개정 2011.2.9>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

기타 수질오염원의 구분		시설 설치 등의 조치
1. 수산물 양식 시설	가. 가두리 양식어장	1) 사료를 준 후 2시간 지났을 때 침전되는 양이 10퍼센트 미만인 부상(浮上)사료를 사용한다. 다만, 10센티미터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種苗)에 대한 사료는 제외한다. 2) 「사료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사료공정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상사료 유실방지대를 수표면 상·하로 각각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뇨를 수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호소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어병(魚病)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	1) 시료찌꺼기·배설물과 그 밖의 슬러지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면적이 사육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고 깊이가 1미터 내지 1.5미터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깊이를 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고 1에 따라 배출수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2) 양식수조를 청소하거나 양식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를 세척할 때에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은 1)의 침전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별도의 침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양식수조를 청소할 때에는 청소주기 및 연간 청소횟수를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4) 1) 또는 2)에 따라 설치된 침전시설에 가라앉은 침전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침전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목(細目)여과망·모래여과상 등의 여과시설 또는 침전물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 수질오염원의 구분	시설 설치 등의 조치
	다. 수조식 양식어업 시설 나목에 정한 조치의 내용과 같다.

비고 : 1. 양만장, 일반양어장, 수조식 양식어업시설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배출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별도의 시설 또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4) 농지법

-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여기에서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와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생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지’를 의미함.
- 농지에 내수면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동법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함.
 -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나,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그 밖의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수산종묘 배양시설,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어업인이 자기 어업 경영에 사용하는 어업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에서의 토지이용행위는 허용되어 있음.
 - 따라서, 농업진흥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양어장 및 양식장 시설과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수산종묘 배양시설,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어업인이 자기 어업 경영에

사용하는 어업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함

<참조 조문>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농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③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

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⑥ 생략

⑦ 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그 밖의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豫冷)·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시행규칙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7항제1호에서 “그 밖의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수산종묘 배양시설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물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7.18] 제35조

시행령 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② 삭제 <2009.11.26>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력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6>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3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시행령 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1.12.8>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 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주택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

제 3 장 내수면 어업 관련 법제의 검토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 모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하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나.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다.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라. 일반목욕장·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장	제한없음	제한없음
7.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이하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 모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이하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비교>

1.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3.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의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동법 제12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공작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별표 1]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양어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동법의 제한을 받고 있음.
 - 내수면 양식장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의 가. 동식물 관련시설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있으면 설치가 허용됨.
 - 그러나, 설치가 허용되는 양어장의 기준은 ‘유지(溜地)·하천·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음.
 - 축사나 잠실(蠶室) 등 다른 동식물 관련 시설과는 달리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가 아닐 경우에는 양어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음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양식인들에게 중대한 입지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음.

<참조 조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9.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준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이하 생략)
-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地目)이 대(垓)인 토지

[별표 1] <개정 2011.12.8>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p>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의 및 생업을 위한 시설</p>	<p>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p>
<p>가. 동식물 관련 시설 1) 축사</p>	<p>가) 축사(소·돼지·말·닭·젓소·오리·양·사슴·개 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사에는 33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과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과수원 및 초지의 축사는 1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초지와 사료작물재배지에 설치하는 우마사(牛馬舍)는 초지 조성면적 또는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축사의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 ②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관리방안이 반영된 지역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 명령을 받은 시·군·구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p>
<p>2) 잠실(蠶室)</p>	<p>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p>

3) 저장창고	소·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양어장	유지(溜池)·하천·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육장	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곤충 등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콩나물 재배사	가) 1가구당 기존면적으로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콩나물재배사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콩나물재배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1)라)② 및 ③의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7) 버섯 재배사	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1)라)② 및 ③의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8) 퇴비사 및 발효 퇴비장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합산 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되, 발효퇴비장은 유기농업을 위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9) 육묘 및 종묘배양장	
10) 온실	수경재배·시설원에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2011년 2월 18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3월 9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됨.
- 이 법은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이 문제됨에 따라,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은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낚시인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도입,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제도의 도입,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과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의 도입 등으로, 총 8장, 55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 본래 낚시업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수면어업법의 낚시업 관련 규정이 대부분 삭제되고, 현재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내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공유수면은 허가를, 사유수면은 임의적인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으로 내수면이 사유수면일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등 그 외의 수면 등에서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제 2 절 주요 국가의 내수면 어업 관련 법제 검토

1. 일본의 내수면어업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1) 일본 내수면어업의 개관²⁾

- 일본의 내수면어업은 하천, 호소 등 공공수면에서 수산자원을 채포하는 어로어업과 사유수면 등에서 수산자원을 양식하는 양식업으로 나누어짐
- 일본의 내수면어업의 생산량은 1990년대 초반까지 20만톤 대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생산량이 감소하여 2005년에는 10만톤 이하로 감소함
- 어로어업과 양식업 모두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전체 내수면 생산량에서 어로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6%, 양식업이 44%로서 양식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일본의 내수면 양식업 형태는 가두리식과 육상양식 형태로 나누어지며, 육상양식은 지수식, 유수식, 순환여과식, 하우스식으로 나누어짐
 - 2005년 기준 내수면 양식업의 전체생산량은 4만2천 톤으로서 1985년의 9만6천톤에 비해 절반 이상이 감소함
 - 어종별 양식생산량은 뱀장어(48%), 송어류(29%), 은어(14%), 잉어(10%) 순임

2) 한형균 외, 내수면 연구 선진화 방안, 국립수산과학원 민물생태연구단 최종보고서, 국립수산과학원, 2009. 2., 29-31쪽 참조.

(2) 일본의 내수면어업 관련 법제

1) 어업법

내수면의 이용·관리와 관련하여 어업권과 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 및 유어 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① 내수면 어업권

- 내수면을 규정하고 있는 어업권은 제5종 공동어업권이고 어업권의 대상 수역은 내수면과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호소에 준하는 해면임.
- 제5종 공동 어업권은 내수면어협에게 면허됨.

② 유어규칙

- 제5조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내수면에 대해 내수면어협은 조합원 이외의 어업권 대상인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자(유어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유어규칙을 만들어 도도부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내수면어협에서 작성한 유어규칙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은 도도부현지사는 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유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거나, 유어료가 수산동식물의 증식 및 어장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유어규칙을 인가함.

2) 수산자원보호법

- 수산자원보호법에서는 수산동식물의 채포제한, 어법의 제한, 수산동식물의 종묘 수입방역제도, 보호수면의 설정, 소하성 어종의 보호 배양을 위한 연어·송어 방류사업의 추진 및 어도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수면어업과 관련된 규정은 폭발물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채포 금지, 수산동식물을 마비시키거나 죽게 하는 유독물의 사용 금지 또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의 소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어의 채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음.

3) 내수면어업조정규칙

- 내수면어업조정규칙은 어업법과 수산자원보호법에 근거하여 도도부현마다 제정됨.
- 해당 도도부현지사는 농림수산성이 작성한 모델을 기본으로 각 도도부현의 여건을 감안하여 어업조정규칙을 작성하며,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내수면어업조정규칙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어업단속, 어업조정 및 수산자원의 보호배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업질서의 확립에 기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수산동식물 채포 허가, 허가 신청방법 및 유효기간, 유해물의 유기 및 누출 금지, 수산동식물의 채포 금지기간·체장제한, 어구·어법의 제한, 채포금지구역 설정, 소하성 어류 통로 차단 제한, 외래어 이식제한, 금지구역에서 모래채취 금지, 벌칙 등임.

<예시> 홋카이도 내수면 어업 조정 규칙

어업법 제65조 제 1항 및 수산자원 보호법 제4조 제 1항의 규정 및 이러한 법률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제정한다.

목 차

제1장 총칙(제1조- 제3조)

제2장 수산동물의 채포의 허가(제4조- 제20조)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배양, 어업 단속 등 (제21조- 제29조)

제4장 벌칙(제30조- 제33조)

부 칙

제 1 장 총 칙

(목적)

제 1 조 이 규칙은 어업법 제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내수면에 있어서의 수산자원의 보호 배양, 어업 단속 기타 어업 조정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또는 신고의 경유 기관)

제 2 조 수산 동식물의 채포에 관계되어, 지사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시읍면장 및 지청장을 경유해 신청하거나, 또는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홋카이도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도부현의 지사의 부신서를 첨부하여, 직접 지사에 신청하거나, 또는 신고해야 한다.

(대표자의 신고)

제 3 조 어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신고는, 별기 제1호 양식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수산 동식물의 채포의 허가

(수산 동식물의 채포의 허가)

제 4 조 다음의 어구 또는 어법에 따라 수산 동식물의 채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구 또는 어법마다,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어업권 또는 입어권에 근거하여 하는 경우 및 어업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어규칙에 근거하고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자망(제2호 제외한다)
- 2 유망
- 3 저망
- 4 땅나무망
- 5 배나무망
- 6 주낙
- 7 투망
- 8
- 9 어살
- 10 도그물

(계가의 신청)

제 5 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채포의 허가」라고 한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기 제2호 양식의 신청서를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 2 지사는 전항의 신청서 이외에, 해당 신청서에 대해서 허락 여부의 결정에 관계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가 있다.

(허가의 유효기간)

제 6 조 채포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지사는 어업 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배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수면 어장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항의 허가의 유효기간을 그 필요의 한도에서, 단축할 수가 있다.

(허가증의 교부)

제 7 조 지사는 채포의 허가를 했을 때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기 제3호 양식의 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허가증의 휴대 의무)

제 8 조 채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허가에 기한 수산동식물의 채포를 할 때에는, 전조의 허가증을 스스로 휴대하거나, 또는 종사자에게 휴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2 허가증의 갱신 신청 이 외의 이유에 의해, 허가증을 행정청에 제출 중인 사람이 해당 허가와 관련되는 수산 동식물의 채포를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주소지의 시읍면장이 그 기재 내용이 허가증의 기재 내용과 동일하고, 해당 허가증을 행정청에 제출 중인 취지를 증명한 허가증의 사본을 스스로 휴대하거나, 또는 종사자에게 휴대시키면 좋은 것으로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허가증의 교부 또는 환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증의 사본을 해당 시읍면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허가증의 양도등의 금지)

제 9 조 채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증 또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의 사본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

제10조 지사는 어업 조정상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배양을 위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채포의 허가에, 해당 허가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는 채포의 금지)

제11조 채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채포의 허가의 내용(채포의 종류(해당 어구 또는 어법에 따르는 수산동식물의 채포를 어종 등에 의해 구분한 것을 말한다), 채포의 구역 및 채포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반해 수산 동식물의 채포를 해서는 안 된다.

(허가의 내용의 변경의 허가)

제12조 채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채포의 사가(許可)의 내용에 대해 변경

하려고 할 때는, 별기 제4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제5조 제2항급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허가증의 갱신 교부의 신청)

제13조 채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증의 기재사항(허가의 내용을 제외한다.)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별기 제5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사에게 허가증의 갱신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증의 재교부의 신청)

제14조 채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 이유를 붙여 지사에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증의 갱신 교부급재교부)

제15조 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게 허가증을 고쳐 교부하거나, 또는 재교부한다.

- 1 제12조의 허가를 했을 때.
-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갱신 교부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의 신청이 있었을 때.
- 3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채포의 허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제한 혹은 조건을 붙였을 때.

(허가증의 반납)

제16조 채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허가가 그 효력을 잃어, 또는 삭제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허가증을 지사에 반납해야 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증의 갱신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의 종전의 사가증에 대해서도, 또 같이로 한다.

- 2 전항의 경우에 대해, 허가증을 반납할 수가 없을 때는, 이유를 붙여 그 취지를 지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 3 채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해, 또는 해산했을 때는, 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해 설립한 법인 또는 청산인이 전2항의 수속을 해야 한다.

(사가를 하지 않는 경우)

제17조 지사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포의 허가를 하지 않는다.

- 1 신청자가 어업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정신을 현저히 결여한 자일 때.

2 어업 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 배양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지사는 전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채포의 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미리, 내수면 어장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과 동시에, 해당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문서를 가지고 통지하고, 공개에 의한 의견의 청취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전항의 의견의 청취시에는, 해당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변명하거나 또는 증거를 제출할 수가 있다.

4 지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채포의 사가를 하지 않을 때는, 내수면 어장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한다.

(허가의 취소)

제18조 지사는 채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전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해당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2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내수면 어장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되는 청문의 기일에 있어서의 심리는, 공개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업 조정을 위한 허가의 변경, 취소해 또 채포의 정지등)

제19조 지사는 수산자원의 보호 배양 기타 어업 조정을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포의 허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한 혹은 조건을 붙여 취소하거나, 또는 채포를 정지시킬 수가 있다.

2 채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는 처분에 위반했을 때에도, 전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동항의 위반자의 전부의 채포의 허가에 대해 행할 수가 있다.

4 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포 허가의 내용의 변경, 제안 혹은 조건의 부가 또는 채포의 정지를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허가의 실효)

제20조 채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또는 해산했을 때에는, 해당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3 장 수산자원의 보호 배양, 어업 단속등

(유해물의 유기 또는 누설의 금지)

제21조 수산 동식물에 유해한 것을 내수면에 유기하거나, 또는 배출해서는 안 된다.

- 2 공·광업의 폐물을 내수면에 배출 혹은 방폐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종류, 성분, 분량 및 배출 또는 방폐의 시기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사의 검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3 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결과에 대해서, 수산동식물의 번식 보호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제해 설비의 설치를 명하거나 또는 이미 마련한 제해 설비의 변경을 명할 수가 있다.
- 4 전2항의 규정은 수질오탁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지기간)

제22조 다음의 표의 상란에 있는 수산동물은, 각각 동표 하란의 기간에 채포해서는 안 된다.

- 2 연어 또는 송어가 산출한 알은 이것을 채포해서는 안 된다.
- 3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해 채포한 수산동물(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제품은, 소지하거나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어구 또는 어법의 제한 또는 금지)

제23조 다음의 어법에 따라, 수산 동물을 채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3호의 어법에 대해서는, 빙어, 뱀어 또는 새우의 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수중에 전류를 통해서 하는 어법
- 2 작살 및 갈고리를 사용하는 어법
- 3 모시망을 사용하는 어법
- 2 소형 정치망 및 저건망에 의해 수산동물을 채포해서는 안된다. 다만, 어업권 또는 입어권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 아바시리강 중, 아바시리강 입구로부터 아바시리호 호구에 이르는 구역에서는,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는, 뜰채그물을 사용하는 어법에 의해 수산동물을 채포해서는 안 된다.

(금지 구역 및 금지기문)

제24조 다음 상란에 있는 구역에서는, 동표 중란에 있는 기간에, 동표 하란에 있는 수산 동물을 채포해서는 안 된다.

- 2 수산자원 보호법 제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다음의 각 호의 보호 수면의 구역에서는, 수산 동물을 채포해서는 안 된다.
- 3 지사가 수산자원의 보호배양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 및 기간(이하 「자원 보호 수면 등」이라고 한다.)에, 지사가 지정한 수산 동물(이하 「보호수산 동물」이라고 한다.)을 채포해서는 안 된다.
- 4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자원 보호 수면 등 및 보호 수산 동물을 지정하려고 할 때에는, 내수면 어장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한다.
- 5 제3항의 자원 보호 수면 등 및 보호 수산 동물의 지정은, 지사가 고시에 의해 하는 것으로 한다.
- 6 전2항의 규정은 자원 보호 수면 등 및 보호 수산 동물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7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 동물(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제품을 소지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야문에 있어서의 채포의 금지)

제24조의 2 시코쓰풀(치토세강 중 호구에서 타키노우에 제방에 이르는 구역을 포함한다.)에서는,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사이 중 지사가 고시한 시간내에는 각시송어를 채포해서는 안 된다.

(모래나무등의 채취 허가)

제25조 어업권의 설정되어 있는 어장 내, 전조에 규정하는 금지구역 또는 보호수면 내에 있어, 모래와, 흙 혹은 암석(이하 「모래나무 등」이라고 한다.)을 채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기 제6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2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어장 내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전항의 신청서 외에 해당 어장과 관련되는 어업권을 가지는 사람의 동의를 더해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 3 전항의 경우에 대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업권을 가지는 사람이, 모래와 자갈 등의 채취에 의해 수산자원의 보호 배양상 통상의 지장이 없거나, 또는 그 외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동의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기재한 서면도 연고 동의서에 대신할 수가 있다.
- 4 전항의 경우에 대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동의서에 대신해서 그 사정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했을 때에는, 지사는 해당 허가신청자 및 해당 어업권자로부터 사정을 청취 후에,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명할 수가 있다.
- 5 지사는 제1항의 허가를 했을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허가증을 교부한다.

(사쿠하 어류의 통로가 단절된 수산동물의 채포의 제한)

제26조 사쿠하 어류의 통로가 단절된 수산동물의 채포를 행하는 경우에는, 강폭의 3분의 1이상의 어도를 개통해야 한다.

(시험 연구 등의 적용 제외)

제27조 이 규칙 중 수산동식물의 종류 혹은 크기, 수산 동식물의 채포의 기간 혹은 구역 또는 다시 사용하는 어구 혹은 어법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규정은, 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하는 시험 연구, 교육실습 또는 증양식용의 종묘(종란을 포함한다.)의 자급 혹은 공급(이하 본조에 있어 「시험 연구 등」이라고 한다.)을 위한 수산 동식물의 채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전항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기 제7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3 지사는 제1항의 허가를 했을 때에는, 별기 제8호 양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4 지사는 제1항의 허가에는, 필요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5 제1항의 계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허가와 관련되는 시험 연구 등의 종료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6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증으로 기재된 사항에 위반하여, 해당 시험 연구 등을 행해서는 안 된다.

7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증으로 기재된 사항에 대해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8 제2항으로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대해 제3항 중 「교부한다.」라고 「고쳐 써 교부한다.」라고 읽어 바꾸는 것으로 한다.

9 제8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 준용한다.

(어장 또는 어구의 표지의 설치와 관련되는 신고)

제28조 어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어장 표지의 건설 또는 어구의 표지의 설치를 명령받은 사람은, 그 명령받은 방법에 의해 해당 표식을 건설하거나,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표지의 갱신 또는 재설치 등)

제29조 전조의 표지의 기재사항으로 변경을 발생시키거나 혹은 해당 증지기에 기재한 문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 표지를 망실하거나, 혹은 훼손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것을 고쳐 쓰거나 또는 새롭게 건설하거나, 혹은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중국의 내수면어업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1) 중국의 내수면어업의 개관³⁾

- 중국은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내수면 수산물의 생산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내수면어종이 800여종에 이르며, 2005년 상반기 기준으로 내수면수산물 생산량은 918만톤임
 -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수산물 생산국으로서, 수산물 생산량이 1985년 이후 매년 10% 정도씩 증가하고 있음
- 수산물 수출 역시 1978년 9만 톤에서 2003년 158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나, 수출국이 일본, 미국, 한국 등 소수 국가에 한정되어 있음
- 개혁 개방 이후 내수면양식업은 농촌 경제발전의 주요 산업으로서 인식되고 있음
 - 1979년 중국 정부는 합리적 자원이용, 양식업 발전, 품질향상이라는 세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양식업을 중심으로 양식, 포획, 가공을 동시에 발전시키되, 지역에 적합한 어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침을 제시함

(2) 중국의 내수면어업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1) 어업법

① 제정 경과

- 1986년 1월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을 가결, 공포하였음.
- 하지만 어업법이 제정되기 전 10년 동안 어업규칙 및 그에 준하는 제도를 약 200여건 공포하였음.
- 이에 따라 1978년 제11기 삼중전회부터 어업법이 제정된 다음해인 1987년까지 각급의 어정관리 기구가 설립됨.

3) 한형균 외, 내수면 연구 선진화 방안, 국립수산과학원 민물생태연구단 최종보고서, 국립수산과학원, 2009. 2., 32-37쪽 참조.

② 어업법의 내용

- 제1장 총칙에서는 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내수면, 영해 및 그 밖의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일체의 해역에서 수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양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2장에서는 양식장을 전국민소유부문, 집단소유부문, 개인부문으로 구분함과 동시에 양식장의 효율적 이용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장에서는 어업의 구분, 어획노력량의 제한, 어업허가의 성격, 어선검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4장에서는 금지된 어획방법, 금어구, 금어기, 금지어구와 함께 간척금지과 해양오염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5장에서는 국가가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귀중한 생물의 포획이나 타인이 양식하고 있는 양식물의 절취, 타인의 양식지역·양식시설의 파괴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규정하고 있음.
- 제6장에서는 부칙을 담고 있음.
- 어업법 제5조, 제9조, 제14조는 양식수면의 적극적 활용이나 양식어업의 발전을 위해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문화해 놓은 것임.

2) 어업법 실시세칙

① 어업법 실시세칙의 제정

- 1987년 어업법의 규정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어업법 실시세칙이 공포되었음.

② 어업법 실시세칙의 내용

- 1980년 이후 연안의 어성을 등록시켜 어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였고 어선의 어구 수와 어업방법을 검사하여 어장과 어기를 규정함.
- 금어구, 금어기, 휴어기제도를 실시함. 매년 여름, 황해는 7-8월, 동중국해는 7-10월, 남중국해는 6-8월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류의 산란, 번식 및 치어의 성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어업 및 망어업에 대한 금어기로 설정함.

- 망목규격, 자원에 유해한 어구 및 어법의 사용금지를 규정함. 자원에 해를 주는 어구의 사용제한, 개량·폐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폭약 및 독극물에 의한 어획을 엄금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 성, 시, 자치구에 이르는 행정기관은 75종의 주된 경제적 어획대상에 대하여 허용어획량 및 어획량에서 차지하는 치어의 최대 허용량을 규정하도록 함.
- 어업수질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검사하도록 규정함.

3) 기타주요법제

- ①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 ②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 ③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 실시세칙
- ④ 중화인민공화국 수오염방지법

제 4 장 내수면어업법 등 하위법령 개정안 제시

제 1 절 내수면어업법 개정의 주요 쟁점 검토

1. 면허·허가·신고어업제도 개선

(1) 어업권 관리 강화 방안

1) 현행법상 면허의 유효기간

- ① 양식어업 : 10년, 단, 수산자원 보호, 어업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로 할 수 있음
- ②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 5년, 단,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음
- ③ 유효기간의 연장
 -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각각 10년, 5년의 기간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 의무적 허가
 -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했을 때, 총 연장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년, 그 밖의 면허어업(정치망어업, 공동어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④ 연장 불허의 사유
 - 어업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을 허가해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수산자원의 산란, 성육 등 번식의 보호와 수산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치망, 공동어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 금지되고 있는 경우, 어선, 어구,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우선순위 배제 사유

-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사유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① 어업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을 허가해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불성실한 어업자도 사실상 20년간 어업권을 보유(어업손실 보상 등)하게 되어 한정된 수면의 이용 극대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의욕 있는 젊은 인력의 유입을 제한하고 어업경영의 효율성 저해
- ② 면허기간 연장 불허 사유중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면허기간 연장불허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③ 따라서, 어업면허 연장시 어업권 경영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어업의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허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 그동안의 조업실적이나 법령위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연장 허가 또는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규제로 볼 수 있으므로 평가의 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할 것임. 이것이 명확하게 정해진 후에서야 비로소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④ 어업제도개혁위원회에서도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의 평가제도 신설을 고려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임.⁴⁾

<참고 자료>

- 수산업법상 면허 우선순위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배제 사유에 대한 객관성 부족 및 평가지표의 부족으로 일선 시군에서는 이를 강력히 이행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우선순위 배제항목을 객관화하고, 세부적으로 평가지표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실효성 확보
- 예컨대,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 부실은 인근지역 헥타르 당 평균 생산실적을 고려하여 최소 생산치를 3년 기준으로 평가하여 평균 생산실적의 30% 이하일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방안 고려

4) 제2차 어업제도개혁위원회 논의 자료(내부자료) 참고.

3)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평가 규정 신설(단,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신청에 대해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어업실적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함께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①~③ 생략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새로이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실적, 어업의 경영상태, 어업인 교육 수료 등을 평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어업허가제도 관리 강화

1) 우선순위 제도

- ① 도입 취지 :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영세어민의 보호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어업권이 소멸되는 어업권자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업을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함
- ② 내용 :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 부여(법 제10조 제1항)
 - i)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 어업계, 법인과 그밖의 단체
 - ii) 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 iii)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하여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 ③ 조례에 의한 허가의 우선순위 결정
 -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는 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개정이유⁵⁾ : 동조 제1항에서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정부는 경제적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로 판단하였고, 국무총리실은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 방침”에 의거하여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결정하였음
 - 어업제도개혁위원회에서도 면허제도의 우선순위 규정을 면허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조례 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수산관계법령을 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④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이러한 우선순위는 허가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타당하나,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허가를 신청한 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우대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동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따르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라고만 되어 있어서 종전에 허가를 득했던 자와 과거에 동종의 어업을 경영했던 자의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조 제2항은 지자체에서 제1항의 우선순위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나, 이러한 해석은 제1항의 존재 의의를 상쇄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제1항의 우선순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동순위자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등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앞에서 지적했던 허가를 신청하기 직전에 허가를 득했던 자와 과거에 동종의 어업을 경영했던 자 중에서 전자를 우선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⑤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법 제10조 제2항 규정 문구 수정

제10조 (우선순위) 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5)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문위원,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권경석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010. 2.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법인과 그 밖의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 ②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동순위자간의 우선순위에 관해 지역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 중인 특별자치도·시·군·구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허가 재신청시 어업실적 평가

①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허가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허가를 재신청하는 경우에 조업실적이나 경영이 불량한 자, 불법어구의 사용 등 관계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 연장허가 또는 허가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음

- 불법어구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어구 사용시 행정처분과 더불어 3회 이상 적발시 어업허가 취소를 고려해볼 수 있음

②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어업의 유효기간 규정에 해당 내용 신설

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 허가어업 및 제11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어업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허가를 재신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실적, 어업의 경영상태, 어업인 교육 수료 등을 평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육상양식어업의 재분류

1) 현행법 규정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은 신고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cf. 양식어업은 면허어업으로 분류)
- 육상양식어업 :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2) 법률 연혁

- 1975년 당시 내수면개발촉진법은 양식어업을 면허어업으로 분류하고, 육상양식어업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음.

- 다만, 일정한 사유수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000. 7. 29. 내수면어업법 및 동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수면에서 행할 수 있는 신고어업의 종류를 투망어업, 어살, 통발, 외줄낚시, 육상양식, 관상어양식어업의 6개에 한정함으로써 어업질서의 확립과 어업자원의 보호를 도모함

3) 육상양식어업 허가제 전환의 필요성

- 현재 육상양식어업에 해당하는 품종은 뱀장어, 송어, 메기, 향어 등으로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내수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05년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으로 양식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업계 내부에서도 면허제 또는 허가제로 전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면허제로의 전환 요구는 육상양식어업의 대부분이 사유수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유수면에 대한 면허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허가제로의 전환 요구는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를 통해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양식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무분별한 신규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어가(漁價)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2004년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해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바 있기 때문에, 해면어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육상양식어업을 허가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2004년 수산업법 개정

- 육상 해수면양식어업을 원래 신고어업이었던 것을 허가어업으로 전환

수산업법[시행2005.7.1] [법률 제7314호, 2004.12.31, 일부개정]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陸上種苗生産漁業)의 무분별한 신규진입으로 인한 적조피해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양식어업의 경영

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

수산업법

제41조 (허가어업) ①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5>

1.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육상해수양식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3. 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생산하는 어업(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허가의 우선순위는 어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정한다.

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유예, 허가의 제한사유,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 종묘생산어업의 종묘의 종류 및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의 시설기준

⑤ 행정관청은 제35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종류) ①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②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종묘를 생산(육상 또는 해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어업
2.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3. 밧줄식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에 밧줄을 설치하여 채묘연(採苗漣)을 수직으로 늘어뜨려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4. 말목식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간석지에 말목을 설치하고 그 말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5. 뗏목식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에 뗏목을 설치하고 그 뗏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4) 육상양식어업의 허가제 전환시 고려 사항

① 첫째, 육상양식어업을 허가제로 전환할 때 허가의 대상은 양식 ‘시설’이 될 것이므로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양식 대상인 뱀장어, 송어, 메기, 향어 등은 어종별로 습성 및 양식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모두를 포괄하는 허가의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육상양식어업을 일괄적으로 허가제로 전환할 것인지, 일부 어종에 대해서만 허가제로 전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② 둘째, 시설 기준을 마련할 때에도 시설에 따른 기준을 시설 규모로 할 것인지 그밖에 다른 기준을 도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양식시설을 갖춘 어업인에 대해서만 허가를 실시하게 되므로, 영세한 규모의 양식업을 하는 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가장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서 허가제 실시로 인한 새로운 진입 장벽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③ 해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은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육상종묘생산어업으로 분류된 바, 현재 내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은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5) 참고 자료

①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시설 기준

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9.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1호, 2011. 9.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업법」의 개정(법률 제731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이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 어업의 허가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船腹量)의 제한 기준과 연근해어업의 어구(漁具)사용량 제한 및 어구의 표지설치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시설기준 등(제3조제4항·제5항, 별표 4 신설, 별표 5)

(1) 적조(赤潮)피해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어업별 명칭과 양식물 및 생산종묘의 종류, 허가의 시설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어업별 명칭을 각각 수조식(水槽式)어업과 축제식(築堤式)어업으로 하고, 동 어업의 양식물과 종묘(種苗)의 종류와 수질오염방지시설, 적조·고수온방지시설, 월동시설 등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정함.

- (3) 어업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적조 또는 해양 오염에 의한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표 4] <개정 2010.4.28>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3조제4항 관련)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물의 종류	시설기준	
		규모	시설 및 장비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어업	1.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한 수산동식물 2.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	수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제1호 및 비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관련 별표 19 제1호에 따른 시설 설치 등의 조치 2. 적조·고수온 방지시설: 액화산소공급장치, 고순도산소(순도 90퍼센트 이상)발생기, 해수여과시설, 해수저장시설, 지하해수공급시설 중 1개 이상. 다만, 강원도, 전라남도 신안군 이서, 경상북도 울릉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육상축제식 해수양식어업	1.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 수산동식물 2.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	시설면적 0.2헥타르 이상	3. 월동시설: 월동이 필요한 양식물을 양식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월동시설(시설 규모, 시설비율, 수심 등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10.4.28>

종묘생산어업의 종류별 종묘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3조제5항 관련)

종묘생산어업의 종류	생산종묘의 종류	시설기준		
		규모	시설 및 장비	어장사이의 거리
육상수조식 종묘생산어업	어류, 전복, 굴, 해조류, 새우, 해삼, 우렁챙이, 그 밖의 수산동식물	수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 적조·고수온 방지시설: 액화산소공급장치, 고순도산소(순도90퍼센트 이상)발생기, 해수여과시설, 해수저장시설, 지하해수공급시설 중 1개 이상. 다만, 강원도, 전라남도	-

종묘생산어업의 종류	생산종묘의 종류	시설기준		
		규 모	시설 및 장비	어장사이의 거리
육상축제식 종묘생산어업	어류나 그 밖의 수산동식물	시설면적 0.1헥타르 이상 5헥타르 이하	신안군 이서, 경상북도 울릉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월동시설: 월동이 필요한 종묘를 생산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월동시설(시설규모, 시설비율, 수심 등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야 한다)	
밭줄식 종묘생산어업	해조류, 굴, 가리비, 피조개, 새고막, 우렁쟁이, 그 밖의 수산동식물	수면적 0.5헥타르 이상 5헥타르 이하	1헥타르당 100미터의 간승 20줄 이하. 다만, 김·파래는 1헥타르당 너비 2.2미터, 길이 40미터의 시설 5책 이상 18책 이하(겹장시설 가능), 새고막은 1헥타르당 너비 1미터 이하, 길이 100미터 이하의 시설 100줄 이하	100 미터
말목식 종묘생산어업	굴, 그 밖의 수산동식물	수면적 0.5헥타르 이상 5헥타르 이하	1헥타르당 50제곱미터(가로 25미터 이하 × 높이 2미터 이하) 시설 40대 이하	50 미터
뗏목식 종묘생산어업	굴, 진주조개, 그 밖의 수산동식물	수면적 0.5헥타르 이상 5헥타르 이하	1헥타르당 165제곱미터(가로 18미터 이하 × 세로 9미터 이하)당 뗏목 6대 이하	100 미터
※ 비고 시·도지사는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에 대하여 시설규모 및 종묘생산어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종묘의 종류를 두 종류 이상 복합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육상해수양식어업의 경우 크게 수조식과 축제식으로 나누어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규모, 시설 및 장비를 규정하고 있음
- 내수면의 육상양식어업은 양식방법 또는 시설에 따라 크게 1. 지수식, 2. 유수식, 3. 순환여과식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⁶⁾

6) 이정삼·김대영, 우리나라 내수면 양식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수산경영론집 제37권 제3호(2006. 12.), 5쪽.

- 지수식과 유수식은 주로 개방된 노지에서 양식하는 것에 비해, 순환여과식은 육상의 넓지 양식장과 같이 시설물 내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수조에서 양식에 이용되는 물을 순환·재사용하여 양식하는 방식임
- 지수식과 유수식은 초기투자비, 관리비가 적게 소요되는 대신, 수온이나 수량 등의 자연적인 영향을 많이 받음. 이에 비해 순환여과식은 초기투자비,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자연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일정한 온도에서 고밀도로 양식이 가능하여 생산성이 높은 방법임. 하지만, 순환여과식은 순환된 물을 재사용하므로 어병 발생시 확산에 의한 집단 폐사의 위험이 높고, 약품 사용시 여과용 미생물이 죽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⁷⁾
- 이상의 세 가지 양식방법 및 시설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지수식	유수식	순환여과식
양식방법	넓은 면적에 다량의 물을 이용하여 양어	양어지에 항상 새로운 물을 유입	인공적으로 만든 수조에 인위적 산소 공급, 사육수 재사용
양식형태	넓은 면적, 저밀도 양식	좁은 면적, 고밀도 양식	좁은 면적, 고밀도 양식
투자비	저렴	중간 (토목공사비+펌프등)	과대 (수조 공사+설비등)
관리비	저렴	저렴	과다 (전비료+냉각기등)
특 성	자연환경의 영향 많이 받음		자연환경의 영향 최소화
양성기간	온수성 어종은 겨울에 양식 불가능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큼	연중 일정온도로 양식 가능하므로 생산성 높음
대상어종	온수성 어류 잉어, 뱀장어, 메기, 가물치, 미꾸라지	냉수성 어종 무지개송어, 산천어	냉수성+온수성 어종 황복, 뱀장어, 송어

- 육상양식어업을 허가제로 전환시 이상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 규모, 시설 및 장비를 구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7) 이정삼·김대영, 앞의 글, 6쪽.

시설의 명칭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법조항에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육상양식어업을 노지에서 이루어지는 지수식, 유수식 양식을 묶어서 노지식 양식어업으로 하고, 순환여과식 양식은 인공적으로 수조를 만들어서 양식을 하는 것이므로 수조식 양식어업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함 (이는 해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을 수조식, 축제식으로 나눈 것과도 유사함)

○ 다음으로, 노지식 양식어업과 수조식 양식어업의 시설 규모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어업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양식어업을 영위하는데 지나친 진입 규제가 되지 않도록 기준을 낮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적으로 노지식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하는 경우 3,300㎡의 넓은 면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660㎡의 좁은 면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수조식은 보통 좁은 면적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육조와 여과조가 함께 시설되어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설 규모를 정하기 어려움.

②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전업경영인 어업기반 평가 기준

○ 시설 규모에 대한 거의 유일한 명문 규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전업경영인 어업기반 평가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 자료>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상 ‘전업경영인’의 어업기반 평가 기준

- 지원 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전업어업인으로서 본 규정에 따라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 * 전업어업인 : 전문경영품목이 1개 이상으로 연간 20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는 자

[별표1]의 수산업경영인 평가기준표에 따르면, 어업기반에 대해서는 1등급-5등급까지 별표2의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음

[별표2] 어업기반 평가기준

나. 전업경영인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300~450m ²	450~600m ²	600~750m ²	750~1,050m ²	1,050m ²
· 패류	150~300m ²	300~450m ²	450~600m ²	600~900m ²	900m ²
- 육상축제식	0.5~1ha	1~1.5ha	1.5~2ha	2~2.5ha	2.5ha
- 해조류	3~5ha	5~7ha	7~10ha	10~20ha	20ha
- 패류					
· 수하식	1.5~2ha	2~3ha	3~5ha	5~10ha	10ha
· 바닥식	3~4ha	4~5ha	5~7ha	7~15ha	15ha
· 가두리식	0.15~0.25ha	0.25~0.5ha	0.5~0.75ha	0.75~1ha	1ha
- 어류					
· 가두리식	0.3~0.5ha	0.5~1ha	1~1.5ha	1.5~2ha	2ha
· 축제식	1~1.5ha	1.5~2ha	2~2.5ha	2.5~3ha	3ha
- 우렁챙이	1.0~1.5ha	1.5~2ha	2~3ha	3~5ha	5ha
- 복합					
· 수하식	3~5ha	5~7ha	7~10ha	10~15ha	15ha
· 바닥식	3~5ha	5~7ha	7~10ha	10~15ha	15ha
· 축제식	1~1.5ha	1.5~2ha	2~2.5ha	2.5~3ha	3ha
· 혼합식	3~5ha	5~7ha	7~10ha	10~15ha	15ha
- 내수면					
· 가두리식	500~1,000m ²	1,000~1,500m ²	1,500~2,000m ²	2,000~3,500m ²	3,500m ²
· 수조식	300~450m ²	450~600m ²	600~750m ²	750~1,050m ²	1,050m ²
· 지수식	600~900m ²	900~1,200m ²	1,200~1,350m ²	1,350~1,650m ²	1,650m ²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300~450m ²	450~600m ²	600~750m ²	750~1,050m ²	1,050m ²
· 패류	150~300m ²	300~450m ²	450~600m ²	600~1,200m ²	1,200m ²
· 해조류	300~600m ²	600~900m ²	900~1,500m ²	1,500~3,000m ²	3,000m ²
- 육상축제식	0.5~1ha	1~1.5ha	1.5~2ha	2~2.5ha	2.5ha
- 해상	0.5~1ha	1~2ha	2~2.5ha	2.5~3ha	3ha

- 이에 따르면, 수조식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수면적이 최소 300m²이상인 경우에 구간마다 5등급~1등급의 점수를 부여받고, 지수식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수면적이 최소 600m²이상인 경우에 구간마다 5등급~1등급의 점수를 부여받음.

- 따라서, 수조식의 경우 수면적 300㎡을, 노지식의 경우 수면적 600㎡을 시설 기준으로 삼는 것을 고려해볼 만함

6)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법 제9조 제1항의 허가어업에 육상양식어업을 추가(제8호)하고,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신고어업의 육상양식어업의 규정을 삭제함
- ② 시행규칙 [별표 3]에 육상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추가함
- ③ 부칙에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법 제9조 (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항망) 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5. (삭제)

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 어업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령 제9조 (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출납시어업: 외출납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삭제)

6. 관상어양식어업: 실내에서 일정한 시설(수조의 수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제1항제5호·제6호 및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 7 조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12. 0. 00>

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제7조 관련)

1. 자망·연승·패류채취어업 및 낭장망·각망어업

어업의 종류	어업의 규모 및 방법
자망어업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150미터) 이하일 것
연승어업	모릿줄 길이는 허가 한 건에 20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500미터) 이하일 것
패류채취어업	1. 형망: 2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할 것 2. 손틀방류: 1명당 어구 1구를 사용할 것 3. 잠수기: 어선 한척당 잠수부 1명이 조업할 것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낭장망, 각망어구 각각 다섯 통 이내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 이하일 것. 다만, 낭장망 및 각망어구를 연결(W자형 등)하여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각 어구는 25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 비고: 패류채취어업의 경우 어구는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일몰 후에도 조업을 허용할 것인지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어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 대상 자원과 어업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육상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물의 종류	시설기준	
		규 모	시설 및 장비
수조식 양식어업	1. 온수성 어류 2. 열대성 어류 3. 냉수성 어류	수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제1호 및 비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관련 별표 19 제1호에 따른 시설 설치 등의 조치 2. 고수온 방지시설: 액화산소공급장치, 고순도산소(순도 90퍼센트 이상)발생기, 여과시설 중 1개 이상. 3. 월동시설: 월동이 필요한 양식물을 양식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월동시설(시설규모, 시설비율, 수심 등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노지식 양식어업	1. 온수성 어류 2. 열대성 어류 3. 냉수성 어류	수면적 600 제곱미터 이상	

내수면어업법 부칙

① (생략)

② (중전의 육상양식어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어업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는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참조 입법례>

수산업법

부칙 <법률 제7314호, 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전의 육상양식어업 등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신고

를 한 자는 그 신고어업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는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행정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2. 유어객과의 갈등 조정 문제

(1) 문제점

- 어업권이 설정된 수역에서의 유어행위는 어류가 해당 어장에 들어가기 전에 근접수면에서 행하는 어업행위로서 어업권 어업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업자와 유어자간 조정이 요구됨.
- 내수면의 공공성을 고려하고, 유어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어자와 어업권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유어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음.

(2) 개선방안

- ① 어업인과 유어객의 분쟁 발생시 조정 방안 신설 필요성
 - 허가어업인들과 유어객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
 - 낚시관리육성법 및 하위법령의 제정 내용을 고려하면서 분쟁조정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② 따라서, 기존의 제18조의 내용을 제1항으로 두고, 제2항에 동일수계에서 어업인과 유어객 분쟁시 내수면어업인 단체와 유어자단체간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으로 가안을 작성함.

(3) 법률 개정안

<개정안> 법 제18조에 해당 내용 신설

제18조 (유어질서)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동일 수계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자와 유어객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내수면어업인 단체와 유어자단체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권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2중 이상 자망 사용의 허용 문제

(1) 문제점

-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포획, 채취를 금지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는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 대하여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
- 현실적으로 내수면어업인들은 법에 저촉되지만 어느 정도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3중 자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2중 이상 자망을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승인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어구 사용금지 및 관련된 것으로서, 포획, 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등을 정하는 규정과는 구별됨.
- 따라서,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어구 사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

제23조 (어구의 사용금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 해역, 사용기간 및 시기
2. 사용어구의 규모와 그물코의 규격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제14조·제23조 및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식어업 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수산종묘의 포획·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술연구·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의 확보와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산자원의 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제공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

② 제14조·제23조 및 제24조는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4조 및 제23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마을어업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2. 양식어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3.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어장에서 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 7 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①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刺網)의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 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근해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으면 그 사용승인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이 가능한 해역의 범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사용승인이 가능한 기간 및 시기
3. 사용승인 시 포획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예상 어획량
4. 사용승인이 가능한 2중 이상 자망의 규모 및 그물코의 규격
5.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수
6.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 해역 및 그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는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7. 사용승인 시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존 자료의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과 제4항에 따른 관계 시·도지사의 검토 의견(제4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사용승인 가능 건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승인 대상자

를 선정하고, 사용승인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사용승인 신청 해역에서 조업한 실적
 2.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검토 결과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장
 2. 해당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도지사
 3. 사용승인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어업지도사무소장
- ⑧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은 “연안자망어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용승인 신청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시·도지사”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시행규칙 제 8 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① 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경상북도지사.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되,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인 경우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해당 허가를 한 경상북도의 시장·군수·구청장
- ②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3)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2중 이상 자망 사용 금지 및 승인에 관한 규정 신설

법 제21조의3 (2중 이상 자망 사용 금지 및 승인)

- ① 내수면어업에서는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전항의 승인을 위해서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에 어획대상 어류에 따른 사용시기의 적절성, 망목, 그물 크기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식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2. 학술연구·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 확보와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수산자원 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제공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

시행규칙 제23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승인) ① 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어업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자가 2중 자망 이상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0호 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으면 그 사용승인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토 요청을 받은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이 가능한 기간 및 시기
2. 사용승인 시 포획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예상 어획량
3. 사용승인이 가능한 2중 이상 자망의 규모 및 그물코의 규격
4.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수
5. 사용승인 시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국·도립 내수면 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용승인 가능 건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0호 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사용승인 신청 수면에서 조업한 실적
2. 제3항에 따라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이 제출한 검토 결과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 국·도립 내수면 연구기관의 장
2. 사용승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4. 내수면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 기준

(1) 문제점

- 1960년대 후반부터 내수면 어업자원 활용 목적으로 외래어종 도입
 - 향어(이스라엘잉어), 무지개송어 등은 도입 후 내수면의 중요한 양식품종으로 정착되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 블루길·배스* 등은 이식 후 호수, 댐, 하천 등에 정착하여 토속어류와 그 알 등을 먹는 등 생태계 교란 심각
 -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지정('98. 2.19/ 환경부)
- 국내 담수어류 중 멸종위기 종* 18종(야생동식물보호법), 천연기념물** 5종(문화재보호법)이 지정되어 보호 중으로 지속적 복원 필요
 - * 멸종위기종(18종) : 꼬치동자개, 통사리, 감돌고기, 흰수마자, 미호종개, 얼룩세코미꾸리), 다목장어, 칠성장어, 묵납자루, 모래주사, 임실납자루, 가는돌고기, 쭈구리, 돌상어, 가시고기, 잔가시고기 등)
 - ** 천연기념물 : 5종(무태장어, 어름치, 한강의 황쏘가리,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 따라서, 수산동물의 이식관리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외래어종 도입 차단 필요
 - 국내 종묘생산 수급현황 등을 조사하여 국내 종묘생산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품종에 대한 이식 금지
 - 내수면 수산물 불법이식 예방 및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실시

(2) 개선방향

- 내수면 수산자원의 이식(국내 유입 및 국외반출)은 수산자원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서 이를 제한, 금지, 또는 일정한 경우에 승인을 할 수 있음
- 현행 내수면어업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산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수산자원 이식 승인기준 및 절차가 준용되고 있으나, 이는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 보다는 내수면어업법에 직접 수산자원 이식의 제한, 금지, 승인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함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물방역과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을 내수면 어업에 그대로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음.⁸⁾ 이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법률개정안을 작성함

<참고 자료>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

제35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① 행정관청은 해당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이나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염(汚濁)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3.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4.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5.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제한·금지 또는 승인
 6.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 ② 행정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 조업이나 그 해당 어업을 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자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자

8)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물방역과 김진우 과장님과 전화 인터뷰에서 확인된 내용임.

- 6.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을 한 자
- 7. 제37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채취한 자
- 8.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공작물의 설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 10. 제49조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 11. 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 12.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시행령

제17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종묘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자
- 2.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수면 등에 방류하려는 자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7조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험용·연구용·학습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종
- 2. 양식용·방류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품종
- 3. 국내 양식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4.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용 종묘로서 국내 수요에 지장이 없고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2. 국가 간에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반출이 합의된 품종
3. 국가 간의 시험·연구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품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국내반입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자연수계(自然水系)에 유출될 경우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종
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2. 영 제19조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으로 지정된 품종 등 보호가 필요한 품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대상 품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7조에 따른 승인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을 받은 자는 이식하려는 수산자원의 규격, 물량 또는 반입·반출의 기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 이식승인서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수산자원 이식승인서에 적은 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3)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수산자원 이식의 제한·금지·승인에 관한 규정 신설

법 제21조의4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이식의 제한·금지·승인)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적정한 회복을 위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을 제한, 금지 또는 승인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종묘생산 시설에서 기르려는 자
2.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법 제3조의 수면 등에 방류하려는 자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4조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법 제21조의4에 의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의 기준 및 절차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5. 내수면어업법상 행정처분 기준

(1) 문제점

- 현재 내수면어업법상 어업의 제한·정지, 면허나 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수산업법의 시행규칙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상 행정처분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동 규칙은 원칙적으로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내수면어업법에 적용될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 내수면어업법에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경우 수산업법상 시행규칙과의 중복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수면어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적시하거나, 별도로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3)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법 제16조의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규정에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 신설

법 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①~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5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00호 서식에 의한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별지 제00호 서식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량은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6] <신설 2012. O. OO.>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의2 관련)

1. 면허어업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구역 밖에 어구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6조	경고	취소	
2. 양식어업의 어업방법, 규모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6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 관련)	경고	경고	취소
3. 어업시설의 제거나 필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제5항	행정대집행법 준용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 내수면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1조의2	경고	경고	취소

2. 허가, 신고어업

위반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허가어업의 시설규모나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제1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2. 허가어업의 제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제4항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3. 내수면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1조의2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6. 청문 규정

(1) 청문 규정을 두는 이유

-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하려 할 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간 또는 당사자 상호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청문은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청문의 기회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단, 청문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개별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도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의 실시방법, 절차 등의 규정이 적용됨

- 청문규정을 두어야 하는 경우는 인가·허가·면허·등록·승인·지정 등의 취소 및 철회, 법인·조합 등의 설립 취소·해산명령, 철거·폐쇄 명령, 제조·판매 금지, 자격 박탈 등과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이고,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이 일시적인 사항에는 대부분 청문규정을 두지 않음. 이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보다 그 절차가 간단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음⁹⁾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법 제16조의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또는 정지에 대해서는 청문 규정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
- 법 제16조를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와 어업의 허가 또는 면허 취소의 규정으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와 제2항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규정을 구분하여 제16조의2의 규정 내용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면 됨

(3)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청문이 적용되는 사유에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추가

법 제16조의2 (청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동조 제2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유사 입법례>

수산업법 제95조 (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2. 제35조(제49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9)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06, 439쪽.

- 3. 제40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금지
- 4. 제5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 5. 제65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수산자원관리법 **제59조** (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3조제4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 2.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
- 3.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분량의 공개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51조 (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
-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
- 3.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 4. 제33조제4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
- 5.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송차량의 지정취소
- 6. 제37조의16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취소

7. 과태료 규정의 세분화

(1) 문제점

- 법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고,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 사유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1) 과태료 부과제도 합리화

-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9. 8. 26)에서 발표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위반회수별 부과금을 차등하는 등 과태료부과 기준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함

2)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 1회 위반으로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부과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점을 감안하여 각 위반내용별로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상한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국민의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반복위반에 대한 강화된 기준이 적용이 되어 예방적 효과 상승
- 제1호의 경우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한 경우에 대해 위반행위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만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산업법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경영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음(수산업법 시행령 별표6참조).
 - 따라서, 내수면어업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고어업을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한 경우에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은 300만원, 2차 위반은 400만원, 3차 위반은 500만원으로 규정함.
 - 그러나,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신고어업을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한 경우에 과태료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25만, 50만, 100만으로 규정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과도한 금액임.
- 마찬가지로, 제2호의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산업법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유어장을 운영한 경우에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위반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위반횟수를 1, 2, 3차로 나누고 과태료금액도 최소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으로 감액했음.
- 또한 국회 계류중인 내수면어업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함(제4호 및 제6호 신설).

(3)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행정관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개정 2012. 0. 0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제1항 관련)

기 준			개 정		
위 반 행 위	해당 조문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1. 2. 3의 경우 일률적으로 500만원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	3차 위반 이상 500
2. 법 제19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500만원	300만원	400	500
3.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호	10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4. 법 제1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7조 제2항 제1의2호	100만원	50만원	70	100
5.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	100만원	50만원	70	100

8. 기 타

(1)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규정 수정

1) 개정 필요성

- 법 제16조의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규정에서 제한·정지 규정과 면허나 허가의 취소규정의 분리가 타당함
- 수산업법상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제한 또는 정지와 취소의 사유는 구분되고 있음
- 정지의 경우에도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하는 것이 규제 완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또한 내수면어업법에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게 되면,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도 바꾸어야 할 것임

2) 현행 규정

법 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서 양식하거나 방류하였을 때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라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

수산업법 제34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제8호나 제9호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제8호나 제9호에 따라 계류처분을 받은 어선의 관리는 제2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제35조 (면허어업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4.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 5. 어업권자가 제3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6조 (어업권의 취소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9조 (준용규정)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4조, 제35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5>

- ②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 ③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3) 법률 개정안

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①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6. 제21조의2에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
- 7. 어업권자가 이 법,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 8.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 9.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

가 있을 때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3. 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0조 제1항,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는 경우
 5.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법 제21조의4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서 양식하거나 방류하였을 때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라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어도 관련 조항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정비

1) 법 제19조의3

법 제19조의3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⑥(생략)

<시행령 개정안>

제16조 (어도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의3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제1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① 입법취지

-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 협의 생략 근거규정을 둠

② 주요내용 해설

○ 위임사항

- 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어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어도의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어도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어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 다른 법률 시행령의 유사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제외한 경우로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식과 경미한 사항을 총 사업계획의 규모, 비용, 시기 등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따라서, 동 조항에서 ‘경미한 사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결정된 후라면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극적 방식으로 서 법 제19조의3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③ 유사입법례

<참조 조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 4 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립 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무인도서 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공고는 종합관리계획의 개요와 열람방법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410호, 2011.12.28, 일부개정]

제 7 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의 증감 없이 사업의 내용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1. 8.20] [대통령령 제23083호, 2011. 8.19, 일부개정]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6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1.11.25] [대통령령 제23282호, 2011.11. 1, 타법개정]

제10조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총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3. 물가 변동, 공법(工法) 변경 또는 정산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
4.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연장

④ 향후과제

-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2) 법 제19조의4

법 제19조의4 (실태조사) ①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개정안 >

제17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어도의 설치 및 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도의 설치 및 관리 등의 현황 및 국제 동향
2. 어도와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현황
3. 어도의 기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
4.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조사 일시,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① 입법취지

-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태조사 사항을 명문화 함

② 주요내용 해설

- 위임사항
 - 법 제19조의4제3항에서 위임

③ 유사입법례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참조 조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11.28] [대통령령 제21822호, 2009.11.16, 제정]

제 3 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 기능성 양잠산업의 생산기반·유통·가공 등의 현황 및 국제 동향
2. 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현황
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
4.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
5.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조사 일시,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④ 향후과제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사항에 대한 구체화 필요

3) 법 제19조의5

법 제19조의5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안>

제18조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 운영 등)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어도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부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권한의 위탁 등) ① 농림수산부장관이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을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의 설계 및 구성
2.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보안관리
4.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 운영을 위한 교육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 운영지원
7. 그 밖에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농림수산부장관은 수탁사업자에게 그 연도 위탁업무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부장관은 수탁사업자가 어도관리데이터체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입법취지

- 어도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사업 수행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법률상의 명문화

② 주요내용 해설

- 위임사항

- 법 제19조의5제3항

③ 유사입법례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참조 조문>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1.11.23] [대통령령 제23307호, 2011.11.23, 일부개정]

제 2 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보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12.29, 타법개정]

제23조 (권한의 위탁)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중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나 단체를 하나 또는 둘 이상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체계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을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설계 및 구성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보안관리
 4. 국토이용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교육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지원
 7. 그 밖에 정보체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④ 정보체계운영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그 연도 위탁업무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정보체계운영자는 수탁사업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4) 법 제19조의7

법 제19조의7 (조치명령) ① 농림수산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를 설치한 자가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

제18조 (조치명령 등) ① 농림수산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어도설치자에게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이행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부령에 따라 어도의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도의 사후관리를 명령을 받은 자는 어도의 설치 및 관리가 법 제19조제6항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3일전까지 농림수산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명령완료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

-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현장사진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완료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입법취지

- 어도의 사후관리 위반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를 법제화 함

② 주요내용 해설

- 위임사항
 - 법 제1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③ 유사입법례

<참조 조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29] [법률 제10616호, 2011. 4.28, 타법개정]

제 4 조의6 (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의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의4제2항·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오염부하량등을 계속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령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방지사설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할당오염부하량등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사업자”는 “오염할당사업자등”으로, “제42조”는 “제4조의6제4항”으로, “국세채납처분의 예”를 “국세 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로 본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19] [환경부령 제443호, 2012. 1.19, 일부개정]

제17조 (조치명령 등)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조치 명령의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받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및 그 소속 사업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2.16] [환경부령 제362호, 2010. 2.16, 일부개정]

제 3 조 (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영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이행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3 제1호나목(2)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4.7>

③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6>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3일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2010.2.16>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명령완료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2010.2.16>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완료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2010.2.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6. 1] [환경부령 제416호, 2011. 5.31, 일부개정]

제 8 조의14 (조치명령 등) ① 오염총량관리청은 법 제8조의4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

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오염총량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 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오염총량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 보고서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오염총량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④ 향후과제

- 서식 문제
- 조치명령 등에 대한 실질 업무를 담당할 기관에 대한 규정 필요

제 2 절 내수면어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제시

1.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00000호, 2012. 0.00. 전부개정

제 1 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공공용 수면)”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 3 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① 이 법은 공공용 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 4 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①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그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만 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제 5 조(시책 마련) ① 정부는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내수면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양식업(사유수면에서의 양식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 6 조(면허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양식어업(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 7 조(어업권 등) ① 제6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내수면어업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이나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어업시설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⑤ 제4항의 경우 어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집행을 하거나 수면관리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어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의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 8 조(처분 시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함께 이전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어업

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의무도 같다.

[전문개정 2010.5.17]

제 9 조(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항망)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5. 삭제 <2011.3.9>

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제 9 조(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항망)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5. 삭제 <2011.3.9>

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육상양식어업 :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 어업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

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항 제8호 신설**

제10조(우선순위) 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법인과 그 밖의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 중인 특별자치도·시·군·구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제10조(우선순위) 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법인과 그 밖의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②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동순위자간의 우선순위 등에 관해 지역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 중인 특별자치도·시·군·구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 제2항 수정**

제11조(신고어업) ①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 호,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의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자치도지사는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수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수면의 시설유지 및 보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 허가어업 및 제11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17]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 허가어업 및 제11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

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17]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새로이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실적, 어업의 경영상태, 어업인 교육 수료 등을 평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4항 신설**

제14조(조업수역의 조정) ①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受理)할 기관을 정한다.

②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면허·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15조(내수면어업계) 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그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그 내수면에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5명 이상으로 한다.

③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해산·조직·운영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서 양식하거나 방류하였을 때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라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6. 제21조의2에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
7. 어업권자가 이 법,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9.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 면허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2.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3. 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0조 제1항, 2항 및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는 경우
5.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법 제21조의4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서 양식하거나 방류하였을 때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라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항을 두 개 조항으로 분리, 제5항 신설

제16조의2(청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16조의2(청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청문 사유 추가

제17조(보조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제18조(유어질서)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동일 수계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자와 유어객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내수면어업인단체와 유어자단체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권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항과 제3항 신설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17]

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①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는 그 위치에서 하천 전체 물흐름의 평균수심 이상인 장소를 선택하여 하천 전체 물흐름 폭의 5분의 1 이상을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역(水域)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류산란장·번식시설의 설치, 치어 방류 등 어족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댐의 특성이나 주변의 지형 및 여건이 어도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수산에 관한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에 어류의 서식상태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회유성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은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19조의3(어도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어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어도의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도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어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도어도관리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어도관리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역의 관계 기관, 내수면어업계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신설**

제19조의4(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19조의3에 따른 종합관리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어도의 설치 의무자,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설**

제19조의5(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신설**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어도의 관리·유지 실태 조사

2. 어도 설치의 타당성 조사

3.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 열람

②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보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설

제19조의7(조치명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를 설치한 자가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신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 또는 협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8.3, 2009.6.9>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등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 2010.10.16] 제20조제4호

[시행일 : 2012.9.10] 제20조

제21조(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어업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하성어류(遡河性魚類)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공작물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21조의2(포획·채취 금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체장·체중 등 포획·채취 금지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7]

[시행일 : 2012.9.10] 제21조의2

제21조의3(2중 이상 자망 사용 금지 및 승인) ① 내수면어업에서는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전항의 허가를 위해서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에 어획대상 어류에 따른 사용시기의 적절성, 망목, 그물 크기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

를 참고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식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2. 학술연구·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 확보와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수산자원 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제공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

* 신설

제21조의4(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이식의 제한·금지·승인)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적정한 회복을 위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을 제한, 금지 또는 승인을 명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종묘생산 시설에서 기르려는 자
- 2.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법 제3조의 수면 등에 방류하려는 자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신설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23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19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금지를 위반한 자
 5.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의2에 따른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9.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
 10.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 [전문개정 2010.5.17]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19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금지를 위반한 자
5.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의2에 따른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 8의2. 제21조의3을 위반하여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 8의3. 제21조의4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을 한 자
9.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

10.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 제8의2, 제8의3호 신설**

제26조(몰수 등) ① 제25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제27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2.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제19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1의2. 제1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 제1항 제1,2호 신설, 제2항 제1의2호 신설**

부칙 <제10293호, 2010. 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__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육상양식어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00000호, 2012. 0.00, 일부개정]

제 1 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 2 조(공공단체의 범위)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개정 2010.6.8]

제 3 조(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 대한 내수면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수면 어업 제한 등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그 면적

- 3.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기간
 - 4. 허가를 받으려는 사유
 - 5.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점유 또는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전문개정 2010.6.8]

제 4 조(내수면어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의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내수면어업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 5 조(어업면허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를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 6 조(어업시설의 제거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어업시설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신청하려는 수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어업시설의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유
- 2. 수면 및 어업시설의 위치
- 3. 어업권자의 성명 및 주소
- 4. 제거 등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 5. 조치의 시기 및 방법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신청 사유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발생할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명할 수 있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어업시설의 변경·이전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말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 7 조(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낚시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1>

[전문개정 2010.6.8]

제 7 조(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육상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허가어업의 제한 승인) 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사유
2. 제한하려는 어업의 종류·명칭 및 내용
3. 제한하려는 조업구역(도면 첨부)
4. 제한하려는 어업의 규모·방법
5. 제한하려는 수산동식물의 자원 상태
6. 다른 어업과의 관계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 9 조(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 어업
6. 관상어양식어업: 실내에서 일정한 시설(수조의 수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2. 제1항제5호 · 제6호 및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③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 9 조(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삭제
6. 관상어양식어업: 실내에서 일정한 시설(수조의 수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2. 제1항제6호 및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③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0조(수면이용의 협의)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시기
4. 어업의 시설물
5. 어업을 하려는 기간
6. 수면사용료

[전문개정 2010.6.8]

제11조(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산자원의 산란·성육(成育) 등 번식의 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
2.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10.6.8]

제12조(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제한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업의 제한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허가·신고번호
3.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 해당 조치가 어업에 끼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필요한 어업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의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어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의견을 결정할 때에 조치사항의 결정기준과 그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3조(보조대상 사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2. 담수어(淡水魚) 처리·가공·유통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사업
 3. 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조사 및 시험연구사업
 5. 내수면 관련 단체의 육성
 6.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전문개정 2010.6.8]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2.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현황
 4.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시·도보호야생동·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려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6.8]

제15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해어법

의 사용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5조의2(어도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의3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9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 신설

제15조의3(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의4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어도의 설치 및 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도의 설치 및 관리 등의 현황 및 국제 동향
2. 어도와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현황
3. 어도의 기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
4.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 선정기준, 조사 일시,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신설

제15조의4(조치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어도설치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어도설치자에게 그 사유·이행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라 어도의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도의 사후관리 명령을 받은 자는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법 제19조제6항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3

일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명령완료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현장사진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완료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신설**

제16조(보상의 청구)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면허·허가·신고번호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2. 처분사항과 그 날짜
- 3. 손실의 내용
-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사·검토한 후 그에 관한 의견서를 해당 보상신청인과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수익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7조(포획·채취 금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6.8]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관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6.8]

부칙 <제22333호, 2010. 8.11>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내수면어업 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제1항 관련)

기 존			개 정		
위 반 행 위	해당 조문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300만원	400	500
2. 법 제19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500만원	300만원	400	500
3.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 질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호	10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4. 법 제1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7조 제2항 제1의2호	100만원	50만원	70	100
5.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	100만원	50만원	70	100

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0호, 2012. 0.00, 일부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 2 조(어업면허신청서)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점의 선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삼각점을 기점으로 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따른 보조기점을 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삼각점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내수면 주위의 특정기점을 정하여 사용하되, 그 기점이 위치한 장소의 지면(지면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고, 인접지역의 고유명칭을 같이 적는다.
2. 보조기점 및 각점의 표시: 삼각점 및 보조기점으로부터의 방위각·거리(미터) 및 엑스·와이좌표(평면직각중횡선수치)로 표시한다.
3. 특정기점 및 각점의 표시: 특정기점으로부터 방위각 및 거리(미터)로 표시한다.
4. 방위각은 진북(眞北) 0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계바늘의 회전방향으로 계측·표시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 3 조 삭제 <2010.6.11>

제 4 조(면허어업의 명칭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6.11]

제 5 조(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0.6.11]

제 6 조(어업허가신청서) ① 영 제7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수면의 위치도 1부(낙시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 6 조(어업허가신청서) ① 영 제7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 6 조의2(패류 채취용 어구)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1. 손틀방류
2. 잠수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및 패류 채취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 7 조(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6.11]

제 8 조(낙시터의 시설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낙시터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선(수상 낙시대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2. 간이화장실
3.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시설

4. 낚시터 입간판(立看板)

[전문개정 2010.6.11]

제 9 조(어업의 신고)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각 1부

[전문개정 2010.6.11]

제 9 조(어업의 신고)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각 1부

제 9 조의2(사유수면에서의 어업현황 파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의 어업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자치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고어업권 현황: 별지 제6호의2서식
2. 어종별·양식방법별 신고어업 현황: 별지 제6호의3서식
3. 무신고어업 현황: 별지 제6호의4서식

[전문개정 2010.6.11]

제10조(어업면허 등의 번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면허·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10조의2(수면 이용 협의의 처리기한) 수면관리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

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11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전문개정 2010.6.11]

제12조(어업면허증 등의 발급)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9조·제11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 또는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 또는 연장허가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1. 내수면어업면허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내수면어업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3.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 별지 제13호서식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내수면어업면허증 등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13조(어업면허증 등의 재발급)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14조(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 3. 구역
 - 4. 사무소의 소재지
 - 5. 계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6. 계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7. 총회, 그 밖의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8. 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9. 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 11.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3. 해산·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 14.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등 내수면어업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어업권의 취득과 어업 경영
 -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
 - 3. 어구 등의 공동구매 및 판매알선
 - 4. 어업과 관련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 5. 계원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 6. 그 밖에 내수면어업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③ 내수면어업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 1.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 2. 총회의 해산 결의
 - 3. 합병 또는 분할
 - 4. 계원 수가 5명 미만이 된 경우
 - ④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거나 해산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10.6.11]

제15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결정기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해당 어업의 종류·실태 및 규모
- 2.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조건
- 3. 해당 처분으로 인한 어업 피해의 정도

[전문개정 2010.8.30]

제15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00호 서식에 의한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별지 제00호서식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량은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설**

제16조 삭제 <2005.9.30>

제17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① 영 제15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른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4. 허가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어법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18조(어도 설치면제되는 댐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이란 기초지반부터 댐의 마루까지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3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해당 조사 시점부터 과거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19조(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의 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어업 제한을 하려면 미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

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20조(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魚道)를 설치하여야 하는 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국가하천·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댐 외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수산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2. 하천의 수질이 어류의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3. 평수기(平水期)에도 하천의 유량(流量)이 극히 적어 건천(乾川) 구간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6.11]

제21조(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①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어도에 관한 실시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협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도설계기준에 맞게 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어도시설 설치계획서(대상 지점의 수질과 수생생태계의 현황, 수산생물의 이동 상황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어도의 설계도
3. 환경영향평가서 사본(「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수산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어도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의견을 협의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어도의 형식이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이용하기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2. 갈수기(渴水期)에도 어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3. 설계 및 시공 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견에 관한 사항

③ 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11]

제21조의2(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 운영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어도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 장치에 안전하게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설**

제21조의3(권한의 위탁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을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의 설계 및 구성
2.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보안관리
4.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 운영을 위한 교육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 운영지원
7. 그 밖에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탁사업자에게 그 연도 위탁업무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탁사업자가 어도관리데이터체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신설**

제22조(어도설치의 사후관리) ①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어도설치를 완료하였을 때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결과서에 시공 후의 수리시설물과 어도의 사진을 각각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도설치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도시설 사후관리부에 시설물의 전경 사진과 어도의 전경 사진을 붙여 갖춰 두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한 후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어도설치 결과를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 승인) ① 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어업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O호 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으면 그 사용승인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립 내수면연구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토 요청을 받은 국토립 내수면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이 가능한 기간 및 시기
2. 사용승인 시 포획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예상 어획량
3. 사용승인이 가능한 2중 이상 자망의 규모 및 그물코의 규격
4.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수
5. 사용승인 시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국토립 내수면 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용승인 가능 건수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0호 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사용승인 신청 수면에서 조업한 실적
2. 제3항에 따라 국토립 내수면연구기관이 제출한 검토 결과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 국토립 내수면 연구기관의 장
2. 사용승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신설

제24조(수산자원 이식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법 제21조의4에 의한 수산자원의 이식·승인의 기준 및 절차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 신설

부칙 <제143호, 2010. 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 2012. 0. 00.>

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제7조 관련)

1. 자망·연승·패류채취어업 및 낭장망·각망어업

어업의 종류	어업의 규모 및 방법
자망어업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150미터) 이하일 것

어업의 종류	어업의 규모 및 방법
연승어업	모릿줄 길이는 허가 한 건에 20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500미터) 이하일 것
패류채취어업	1. 형망: 2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할 것 2. 손틀방류: 1명당 어구 1구를 사용할 것 3. 잠수기: 어선 한척당 잠수부 1명이 조업할 것
낭장망어업 · 각망어업	낭장망, 각망어구 각각 다섯 통 이내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 이하일 것. 다만, 낭장망 및 각망어구를 연결(W자형 등)하여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각 어구는 25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 비고: 패류채취어업의 경우 어구는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일몰 후에도 조업을 허용할 것인지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어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 대상 자원과 어업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육상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물의 종류	시설기준	
		규모	시설 및 장비
수조식 양식어업	1. 온수성 어류 2. 열대성 어류 3. 냉수성 어류	수면적 <u>300제곱미터</u> 이상	1.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제1호 및 비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관련 별표 19 제1호에 따른 시설 설치 등의 조치 2. 고수온 방지시설: 액화산소공급장치, 고순도산소(순도 90퍼센트 이상)발생기, 여과시설 중 1개 이상.
노지식 양식어업	1. 온수성 어류 2. 열대성 어류 3. 냉수성 어류	수면적 <u>600 제곱미터</u> 이상	3. 월동시설: 월동이 필요한 양식물을 양식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월동시설(시설규모, 시설비율, 수심 등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6] <신설 2012. 0. 00.>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의2 관련)

1. 면허어업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구역 밖에 어구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6조	경고	취소	
2. 양식어업의 어업방법, 규모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6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 관련)	경고	경고	취소
3. 어업시설의 제거나 필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제5항	행정대집행법 준용		
4. 내수면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1조의2	경고	경고	취소

2. 허가, 신고어업

위반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허가어업의 시설규모나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제1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2. 허가어업의 제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제4항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3. 내수면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1조의2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참고문헌

- 국립수산진흥원 진해내수면연구소, 내수면 양식의 개요, 해내수면연구소 자료집 1호, 1997.
- 국회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국회사무처, 2008.
- 김대영,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수산경영론집 제39권 제3호 통권 제78호 (2008. 12), 한국수산경영학회, pp. 111-137
- 김대영 · 이정삼, 내수면 어로어업의 동향과 재편과제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 제37호(2007. 4.),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pp.39-52
- 김대영 · 이정삼, 일본 내수면어업의 이용 · 관리정책에 관한 소고, 해양비즈니스 제7호 (2006),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pp.49-77, 2006.
- 김인배, 내수면 수산업의 현황과 대책, 한국수산학회추계심포지움(1987), pp.69-84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제3차 내수면어업 발전 기본계획(안), 2011.
- 방인철 · 김운,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R&D 사업개발 방안,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2006.
- 이정삼, 세계 내수면어업 동향과 시사점, 월간 KMI 수산동향 5월호(2011), pp. 25-34.
- 이정삼 · 김대영, 우리나라 내수면 양식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수산경영론집 제37권 제3호(2006. 12.), 한국수산경영학회, pp.1-24
- 차철표,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에 관한 小考, 수산해양교육연구 제7권 제1호(1995. 6.),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pp.62-75
- 최종화 · 차철표, 한국의 수산법제, 두남, 201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수면어업의 발전방향, 정책협의회시리즈 17, 1983. 12.
- 한형균 외, 내수면 연구 선진화 방안, 국립수산과학원 민물생태연구단 최종보고서, 국립수산과학원, 2009.
- 해양수산부, 내수면 잠재력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1차년도-, 2005.
- 해양수산부, 내수면 잠재력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2차년도-, 2006.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내수면어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추진, KDI 경제정보센터, 2002.

부 록

내수면어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총괄표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제 9 조 (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항망)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 	<p>제 7 조 (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u>육상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에 대하여</u>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6 조 (어업허가신청서) ① 영 제7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수면의 위치도 1부(<u>낭장망어업 및 각 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u>)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p>제 7 조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및</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p> <p>5. 삭제</p> <p>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p> <p>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p> <p>8.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 어업</p>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p>		<p>방법은 <u>별표 3</u>과 같다.</p> <p>제 8 조 삭제</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10조 (우선순위) 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법인과 그 밖의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② <u>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동순위자간의 우선순위 등에 관해 지역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u></p> <p>③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p> <p>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p> <p>3.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p> <p>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 중인 특별자치도·시·군·구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 제2항 개정</p>		
<p>제11조 (신고어업) ①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 호,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p>	<p>시행령 제9조 (신고어업) ① 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 	<p>제9조 (어업의 신고)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u>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u>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의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자치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을 포획하는 어업</p> <p>5. <u>삭제</u></p> <p>6. <u>관상어양식어업</u>: 실내에서 일정한 시설(수조의 수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p> <p>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p> <p>2. <u>제1항제6호</u> 및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p>	<p>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각 1부</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 제1항 제5호 삭제</p>	
<p>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① 제6조제1항 제1호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p> <p>②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 허가어업 및 제11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할 수 있다.</p> <p>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제10조 제3항 각 호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새로이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실적, 어업의 경</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u>영상태, 어업인 교육 수료 등을 평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u></p> <p>* 제4항 신설</p>		
<p>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u>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u> 정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u> 2. <u>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u> 3. <u>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u> 4. <u>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u> 		<p>제15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u> ② <u>제1항에 따른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00호 서식에 의한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별지 제00호서식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u> ③ <u>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u>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한 경우</p> <p>5. 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p> <p>6. 제21조의2에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p> <p>7. 어업권자가 이 법,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p> <p>8.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p> <p>9.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 면허 또</p>		<p>수 있다. 이 경우 감경량은 당초 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 면허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u> 2. <u>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u> 3. <u>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0조 제1항, 2항 및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u> 4. <u>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는 경우</u> 5. <u>어업권자가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u>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u>6.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p><u>7. 법 제21조의4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서 양식하거나 방류하였을 때</u></p> <p>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라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제16조의2 (청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동조 제2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18조 (유어질서)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동일 수계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자와 유어객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내수면어업인 단체와 유어자단체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한다.</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③ 제2항의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권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의3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어도의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도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어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5조의2 (어도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의3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u>법 제19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u></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도어도관리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어도관리계획(이하</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역의 관계 기관, 내수면어업계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9조의4 (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19조의3에 따른 종합관리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p>	<p>제15조의3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p>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의4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p> <p>1. 정기조사: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p> <p>2. 수시조사: 어도의 설치 및 관리에 활</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어도의 설치 의무자,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p> <p>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도의 설치 및 관리 등의 현황 및 국제 동향 2. 어도와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현황 3. 어도의 기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 4.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 선정기준, 조사 일시,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간접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 신설]</p>	
<p>제19조의5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의 구축)</p>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p>		<p>제21조의2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 운영 등)</p>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어도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보관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본조 신설]</p> <p>제21조의3 (권한의 위탁 등)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을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의 설계 및 구성 2.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보안관리 4.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5.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 운영을 위한 교육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 운영지원 7. 그 밖에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탁사업자에게 그 연도 위탁업무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탁사업자가 어도관리데이터체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제19조의6 (어도의 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도의 관리·유지 실태 조사 2. 어도 설치의 타당성 조사 3.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 열람 <p>②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보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9조의7 (조치명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를 설치한 자가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p>	<p>제15조의4 (조치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어도설치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어도설치자에게 그 사유·이행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라 어도의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어도의 사후관리 명령을 받은 자는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법 제19조 제6항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3일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명령 완료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완료 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본조 신설]</p>	
<p>제21조의3 (2중 이상 자망 사용 금지 및 승인) ① 내수면어업에서는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시·도지사는 전항의 허가를 위해서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에 어획대상 어류에 따른 사용시기의 적절성, 망목, 그물 크기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p>		<p>제23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승인) ① 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어업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자가 2중 자망 이상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O호 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으면 그 사용승인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식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2. 학술연구·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 확보와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수산자원 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제공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 <p>[본조 신설]</p>		<p>③ 제2항의 검토 요청을 받은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승인이 가능한 기간 및 시기 2. 사용승인 시 포획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예상 어획량 3. 사용승인이 가능한 2중 이상 자망의 규모 및 그물코의 규격 4.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수 5. 사용승인 시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p>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국도립 내수면 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용승인 가능 건수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승</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u>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0호 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을 발급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신청인이 사용승인 신청 수면에서 조업한 실적</u> 2. <u>제3항에 따라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이 제출한 검토 결과</u> 3. <u>그 밖에 시도지사가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⑤ <u>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도립 내수면 연구기관의 장</u> 2. <u>사용승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u> <p>[본조 신설]</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제21조의4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이식의 제한·금지·승인) ①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적정한 회복을 위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을 제한, 금지 또는 승인할 수 있다.</u></p> <p>② <u>다음 각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종묘생산 시설에서 기르려는 자</u> 2. <u>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별제3조의 수면 등에 방류하려는 자</u> 3.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u> <p>③ <u>제2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 <p>[본조 신설]</p>		<p>제24조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 기준 및 절차) <u>법 제21조의4에 의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의 기준 및 절차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u></p> <p>[본조 신설]</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제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19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금지를 위반한 자 5.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p> <p>7.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p> <p>8. 제21조의2에 따른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p> <p>8의2. 제21조의3을 위반하여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p> <p>8의3. 제21조의4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을 한 자</p> <p>9.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10.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 관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 자원을 포획·채취한 자</p> <p>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 관리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p>		
<p>제2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p> <p>2. 제19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u>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p>	<p>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행정관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p> <p>1의2. 제1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u>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p> <p>2.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p>	<p>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p> <p>* 별표 2의 개정</p>	
<p>부 칙</p> <p><u>제0조</u> (중전의 육상양식어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p><u>시 종전의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어업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는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u></p>		

내수면어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이유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제 9 조 (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p> <p>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p> <p>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p> <p>4. 패류채취어업: 형망(항망) 또는 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p>	<p>제 9 조 (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p> <p>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p> <p>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p> <p>4. 패류채취어업: 형망(항망) 또는 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p>	<p>1. 개정 사항 : 제1항 제8호 신설</p> <p>2.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양식어업의 허가제로의 전환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규정 수정 - 육상양식어업은 사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신고어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보니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양식어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업의 피해 시 적정한 보상수준의 확보를 위해 어업인들로부터 허가제로의 전환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제기되어 있음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p> <p>5. 삭제 <2011.3.9></p> <p>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p> <p>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p>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p>	<p>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p> <p>5. 삭제</p> <p>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p> <p>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p> <p>8. <u>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 어업</u></p>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p>	<p>- 또한 해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에 대해서도 2004년에 수산업법 개정으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바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이 필요함</p> <p>3. 개정 내용</p> <p>- 내수면어업법 제9조 제1항 허가어업의 종류에 육상양식어업을 추가함</p> <p>- 육상양식어업의 개념정의에 대해서는 종전의 시행령의 규정을 그대로 따름</p> <p>- 이에 따라 신고어업의 종류에서 육상양식어업을 삭제해야 할 것임(시행령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삭제)</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p>	<p>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10조 (우선순위) 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법인과 그 밖의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p>제10조 (우선순위) 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법인과 그 밖의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정 사항 : 제2항 수정 2.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항은 제1항의 우선순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에 따라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제1항의 취지에 반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1항의 존재 의의를 살리면서도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지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주어야 할 것임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p> <p>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p>	<p>②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동순위자간의 우선순위 등에 관해 지역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p> <p>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p>	<p>3. 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치도·시·군·구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동순위자간의 우선순위 등에 관해서 지역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수정해야 할 것임 - 이는 조례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준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p> <p>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p> <p>3.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p> <p>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p>	<p>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p> <p>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p> <p>3.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p> <p>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 중인 특별자치도·시·군·구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 중인 특별자치도·시·군·구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p> <p>②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 허가어업 및 제11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p>	<p>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p> <p>②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 허가어업 및 제11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p>	<p>1. 개정 사항 : 제4항 신설</p> <p>2. 개정 이유</p> <p>-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용되어 있는 면허어업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않아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를 새로 신청해야 하는 허가어업의 경우, 어업실적이 불량한 자 또는 관계법령의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어업권의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불허하거나 허가를 새</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p> <p>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p> <p>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새로이 신청하고자</p>	<p>로 내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한 평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p> <p>3. 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실적, 어업의 경영상태, 어업인 교육 수료 등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를 통한 어업면허의 연장 또는 새로운 허가 등을 인정해야 할 것임 - 다만, 평가 기준 및 절차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에 관한 부처의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을 이번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u>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실적, 어업의 경영상태, 어업인 교육 수료 등을 평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u></p>	
<p>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 	<p>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①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u>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u> <u>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u> <u>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u> <u>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 사항 : 제1항을 두 개 조항으로 분리, 제5항 신설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정지 사유와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는 성질을 달리 하므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어업의 정지의 경우에도 기한을 정하는 것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참조 입법례 : 수산업법 제34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제35조(면허어업의 취소)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p> <p>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서 양식하거나 방류하였을 때</p>	<p><u>한 경우</u></p> <p>5. <u>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u></p> <p>6. <u>제21조의2에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u></p> <p>7. <u>어업권자가 이 법,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u></p> <p>8. <u>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u></p> <p>9. <u>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u></p> <p>② <u>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 면허 또</u></p>	<p>3. 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정지 사유로 규정되었던 수산업법 준용 규정은 풀어서 쓰도록 하고, 내수면어업에 적절하지 않은 규정은 제외하도록 함 - 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함 -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사유 역시 수산업법상 준용 규정을 풀어서 규정하고, 수산자원의 이식승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취소 사유를 수정함 -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함 -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 시행규칙에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함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 면허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2.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3. 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0조 제1항, 2항 및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는 경우 5.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라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6.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p><u>7. 법 제21조의4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서 양식하거나 방류하였을 때</u></p> <p>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u>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라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⑤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제16조의2 (청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16조의2 (청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u>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동조 제2항에 따라</u>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1. 개정 사항 : 조항 내용 추가</p> <p>2.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문 절차는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뿐만 아니라,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항을 추가함
<p>제18조 (유어질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18조 (유어질서)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u>동일 수계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자와 유어객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내수면어업인 단체와 유어자단체간 분</u></p>	<p>1. 개정 사항 : 제2항, 제3항 신설</p> <p>2.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수계내에서 허가 어업인과 유어객과의 분쟁 발생시 해결 방안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자 함 <p>3. 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과 유어객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바람직하나, 이것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u>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u></p> <p><u>③ 제2항의 분쟁조정협회의 구성 및 권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이 불가능할 때에는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p> <p>-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따른 구성 및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함</p>
	<p>제19조의3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어도의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도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어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정 사항 : 제19조의3 신설 (2011. 10. 의원 입법안 현재 법사위 계류중) 2. 개정 이유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어도의 설치 및 사후관리, 개발 및 보급 및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어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어도관리계획을 수립·시행도록 함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도어도관리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어도관리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역의 관계 기관, 내수면어업계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9조의4 (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19조의3에 따른 종합관리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p>	<p>1. 개정 사항 : 제19조의4 신설 (2011. 10. 의원 입법안 현재 법사위 계류중)</p> <p>2. 개정 이유 및 내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에</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어도의 설치 의무자,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 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p>
	<p>제19조의5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의 구축)</p>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9조의4에 따른</p>	<p>1. 개정 사항 : 제19조의5 신설 (2011. 10. 의원 입법안 현재 법사위 계류중)</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2. 개정 이유 및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p>제19조의6 (어도의 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p>	<p>1. 개정 사항 : 제19조의6 신설 (2011. 10. 의원 입법안 현재 법사위 계류중)</p> <p>2. 개정 이유 및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어도의 관리·유지 실태 및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내보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도의 관리·유지 실태 조사 2. 어도 설치의 타당성 조사 3.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 열람 <p>②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보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어도 설치의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고,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인력 확보를 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제19조의7 (조치명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를 설치한 자가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 설치 의무자에</p>	<p>1. 개정 사항 : 제19조의7 신설 (2011. 10. 의원 입법안 현재 법사위 계류중)</p> <p>2. 개정 이유 및 내용</p> <p>-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를 설치한 자가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의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1조의3 (2중 이상 자망 사용 금지 및 승인) ① 내수면어업에서는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시·도지사는 전항의 허가를 위해서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에 어획대상 어류에 따른 사용시기의 적절성, 망목, 그물 크기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개정 사항 : 제21조의3 신설</p> <p>2.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포획, 채취를 금지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는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 대하여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 - 현실적으로 내수면어업인들은 법에 저촉되지만 어느 정도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3중 자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중 이상 자망을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승인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식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2. 학술연구·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 확보와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수산자원 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제공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3. 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중 이상 자망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에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직접 규정함
<신 설>	<p>제21조의4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이식의 제한·금지·승인)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적정한 회복을 위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을 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정 사항 : 제21조의4 신설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u>금지 또는 승인을 명할 수 있다.</u></p> <p><u>② 다음 각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1.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종묘생산 시설에서 기르려는 자</p> <p>2.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법제3조의 수면 등에 방류하려는 자</p> <p>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p> <p><u>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	<p>2.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수산자원의 국내 반입 및 국외 반출에 대해서는 제한 및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p>3. 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내수면어업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서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에 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 보다는 내수면어업법에 직접 수산자원 이식의 제한, 금지, 승인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함
<p>제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p>	<p>제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p>	<p>1. 개정 사항 : 제8의2, 8의3호 신설</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19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금지를 위반한 자 5.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p>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19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금지를 위반한 자 5.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1조의3, 제21조의4 신설에 따른 벌칙 사유 추가 3. 개정 내용 <p><참조 입법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의2호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 제5호에 따르면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의3호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벌칙) 제5호에 따르면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p> <p>8. 제21조의2에 따른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p> <p>9.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p> <p>10.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p>	<p>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p> <p>8. 제21조의2에 따른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p> <p><u>8의2. 제21조의3을 위반하여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u></p> <p><u>8의3. 제21조의4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을 한 자</u></p> <p>9.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p> <p>10.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자원을 포획·채취한 자</p> <p>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p>	<p>자원을 포획·채취한 자</p> <p>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p>	
<p>제27조 (과태료)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p>	<p>제27조 (과태료)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1. <u>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u></p> <p>2. <u>제19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p>	<p>1. 개정 사항 : 제1항을 제1,2호로 구분, 제2항에 제1의2호 추가</p> <p>2. 개정 이유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이 신설됨에 따라 동조항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p> <p>3. 개정 내용 - 법 제19조의7에 따른 조치명령을 불이</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2.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 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p>	<p><u>1의2. 제1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p> <p>2.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 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p>	<p>행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제19조의6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p> <p>- 이에 따라 시행령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함</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0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중전의 육상양식어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어업의 유효기간만료</p>	<p>1. 개정 사항 :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p> <p>2. 개정 이유</p> <p>-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법 시행 당시 신고를 한 육상양식어업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해 육상양식어업으로 허가를 득</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u>일까지는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u></p>	<p>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이 필요함</p> <p>3. 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법 규정 참조하여 규정함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이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제 7 조 (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u>낙시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u>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11></p>	<p>제 7 조 (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u>육상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에 대하여</u>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개정 사항 : 문구 수정</p> <p>2.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9조의 허가어업에서 낙시업이 제외됨으로써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낙시업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육상양식어업이 새롭게 허가어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에 관한 내용을 대체함 <p>3. 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시설에 대해 허가를 신청해야 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추가함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제 9 조 (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u>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 어업</u> 6. 관상어양식어업: 실내에서 일정한 시설(수조의 수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p>제 9 조 (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삭제) 6. 관상어양식어업: 실내에서 일정한 시설(수조의 수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정 사항 : 제1항 제5호 삭제 2. 개정 이유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양식어업의 허가제로의 전환에 따라 신고어업의 종류에서 삭제함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p> <p>2. 제1항제5호·제6호 및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p> <p>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p> <p>2. 제1항제5호·제6호 및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p> <p>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신 설></p>	<p>제15조의2 (어도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의3 제2항 단서에서</p>	<p>1. 개정 사항 : 제15조의2 신설</p>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9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p>	<p>2.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안 제1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 <p>3. 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입법례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외한 것으로 소극적으로 규정
<p><신 설></p>	<p>제15조의3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p>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의4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p> <p>1. 정기조사: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활용</p>	<p>1. 개정 사항 : 제15조의3 신설</p> <p>2.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안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p> <p>2. 수시조사: 어도의 설치 및 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p> <p>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어도의 설치 및 관리 등의 현황 및 국제 동향</p> <p>2. 어도와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현황</p> <p>3. 어도의 기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p> <p>4.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p> <p>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 선정기준, 조사 일시,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p>	<p>3. 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에서는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 제2항에서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함 - 제4항에서는 실태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제5항에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한다.</p>	
<신 설>	<p>제15조의4 (조치명령 등)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어도설치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어도설치자에게 그 사유·이행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에 따라 어도의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p>	<p>1. 개정 사항 : 제15조의4 신설</p> <p>2. 개정 이유 - 법률 개정안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어도설치자가 사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규정함</p> <p>3. 개정 내용 - 제1항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고, 제3항은 제1항의 시정명령 등</p>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③ 제1항에 따라 어도의 사후관리 명령을 받은 자는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법 제19조제6항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3일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명령 완료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p>	<p>사후관리 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19조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p>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있는 서류</p> <p>2. 현장사진</p> <p>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완료 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행정관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행정관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p> <p>* 별표 2</p>	<p>1. 개정 사항 : 제18조에 따른 [별표 2] 개정</p> <p>2. 개정 이유</p> <p>-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안에 신설된 과태료 부과사유의 기준을 추가함</p>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이유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제 7 조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법 제 9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p>	<p>제 7 조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법 제 9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p> <p>* 별표 3</p>	<p>1. 개정 사항 : 제7조에 따른 [별표 3] 개정</p> <p>2.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양식어업을 허가제로 전환시 기존의 허가어업들과 마찬가지로 양식 방법 및 규모를 정할 필요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3에 육상양식어업의 시설규모 및 방법을 규정함 <p>3. 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자망, 연승, 패류 채취, 낭장망·각망 어업을 1.로 하고, 육상양식어업을 2.로 분류하여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규모 등을 규정함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제 8 조 (낙시터의 시설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낙시터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선(수상 낙시대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2. 간이화장실 3.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시설 4. 낙시터 입간판(立看板) 	<p>제 8 조 <u>삭제</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정 사항 : 조항 삭제 2. 개정 이유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에 따라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낙시 관련 규정을 삭제함
<p>제 9 조 (어업의 신고)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p>제 9 조 (어업의 신고)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정 사항 : 제2항에서 육상양식어업 문구 삭제 2. 개정 이유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양식어업이 신고어업에서 삭제됨에 따라 신고 절차에서 육상양식어업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2. <u>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u>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각 1부</p>	<p>2. <u>관상어양식어업</u>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각 1부</p>	
<p><신 설></p>	<p>제15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p> <p>① <u>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00호 서식에 의한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별지 제00호서식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u></p> <p>③ <u>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u></p>	<p>1. 개정 사항 : 조항 신설</p> <p>2. 개정 이유</p> <p>- 법 제16조 제5항에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의 신설에 따라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별표 6을 신설하여 규정하도록 함.</p> <p>3. 개정 내용</p>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u>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량은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제21조의2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 운영 등)</p> <p>①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u></p> <p>②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어도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보관하여야 한다.</u></p> <p>③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u></p>	<p>1. 개정 사항 :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p> <p>2.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조의 5제3항에 따라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p>3. 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조의2에서는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u>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제21조의3 (권한의 위탁 등) ①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을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의 설계 및 구성</u> 2. <u>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u> 3. <u>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보안관리</u> 4. <u>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u> 5. <u>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 운영을 위</u> 	<p>운영에 관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신속한 반영, 별도 저장장치에 저장, 보관에 관한 사항, 최신 정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p> <p>- 제21조의3은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탁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과 수탁사업자에게 운영계획 제출의무 부과 및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p>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u>한 교육</u></p> <p>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 운영지원</p> <p>7. 그 밖에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탁사업자에게 그 연도 위탁업무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탁사업자가 어도관리데이터체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p>	
<신 설>	<p>제23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승인) ①</p> <p><u>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어업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0호 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u></p>	<p>1. 개정 사항 : 제23조 신설</p> <p>2. 개정 이유</p> <p>-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금지 및 승인에 관한 규정이 법률 개정안 제21조의3에</p>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u>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u>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으면 그 사용승인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u></p> <p>③ <u>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용승인이 가능한 기간 및 시기</u> 2. <u>사용승인 시 포획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예상 어획량</u> 3. <u>사용승인이 가능한 2중 이상 자망의 규모 및 그물코의 규격</u> 4. <u>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수</u> 5. <u>사용승인 시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u> 	<p>신설됨에 따라 제3항의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p> <p>3. 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신청 절차를 규정함 - 제2항은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가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을, 제3항은 검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4항은 시도지사가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제5항은 그 결과 통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p><u>6.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이 없</u> <u>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u></p> <p><u>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국도립 내</u> <u>수면 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용승</u> <u>인 가능 건수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u> <u>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승인</u> <u>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로 선정된</u> <u>자에게 별지 제0호 서식의 2중 이상</u> <u>자망 사용승인증을 발급해야 한다.</u></p> <p><u>1. 신청인이 사용승인 신청 수면에서 조</u> <u>업한 실적</u></p> <p><u>2. 제3항에 따라 국도립 내수면연구기</u> <u>관이 제출한 검토 결과</u></p> <p><u>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사용승인과 관</u> <u>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용승인</u> <u>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u> <u>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u></p>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 이유 및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도립 내수면 연구기관의 장</u> 2. <u>사용승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u> 	
<신 설>	<p>제24조(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및 절차) 법 제21조의4에 의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의 기준 및 절차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정 사항 : 제24조 신설 2.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에 관한 규정이 법률개정안 제21조의4에 신설됨에 따라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3. 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를 그대로 준용하여도 무방하므로 준용규정을 둠